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2009. 12

안종석 · 정재호

서 언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자국에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계속 준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자유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거주지 과세 면세대상 소득, 면세방법, 면세범위, 그리고 비용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박사와 정재호 박사가 집필하였다. 좋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박사 그리고 원내 세미나

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 통계분석, 원고정리 등에 많은 노고를 한 이준성 연구원, 성미정 연구원, 홍유남 주임연구행정원, 윤혜순 주임연구행정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출판팀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 : 개혁의 필요성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는 크게 원천지주의 과세원칙과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있다.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는 소득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국내(원천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동등하게 과세한다. 반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소득 발생지는 불문하고 소득을 취득한 기업(납세자)이 거주하는 국가(거주지)에서 과세한다.

거주지주의 과세원칙하에서는 소득 발생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즉, 조세에 의해 투자배분의 왜곡 없이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 이론은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따를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의 적용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가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또는 자국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하

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도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실제 과세는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와 같으며,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현지소득을 거주지로 환수하지 않고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여 원천지주의와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거주지주의 과세가 자국을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특히 고세율국의 기업은 원천지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0%로 인해질 경우 우리나라가 고세율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등에는 실효세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현행 제도하에서 납세자들이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거주지로 환수하지 않고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도한 현지유보는 유보에 따른 직접 비용과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실태를 보면 현지세율이 25% 이상인 국가에 투자한 법인의 경우 현지소득을 모기업으로 환수하는 비율이 평균 24% 정도인 데 비해, 현지 세율이 15~25%인 경우에는 소득 환수율이 약 17%로 낮아지고, 현지 세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거의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세체계 개편시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

주의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 저세율국에 투자하는 것이 세부담 절감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여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직접투자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시장규모와 그 지역의 소득수준 (또는 임금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어느 지역의 국가인지(예, 북미 지역, 동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등)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는 원천지와 거주지 세부담 모두 투자대상지를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할 때의 해외직접투자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해외투자 유인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한계유효세율이 인하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폭이 작아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면세제도로 전환 시 오히려 한계유효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제도로 전환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거주지 과세의 포기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도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률이 매우 낮아 세수입이 많지 않다. 또한 면세제도로 전환시 공제한도 미달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공제한도 초과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환 후 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

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국내 소득을 해외 저세율국의 현지법인 소득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전가격 조작의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해외 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세로 전환하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세제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과세체계 개편방향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커지는 문제는 있으나 이전가격 조작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해외 직접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거주지 과세 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거주지 과세 면제로 전환할 때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 우선 면세대상 소득은 직접투자 소득 중 배당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투자소득을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직접투자 소득으로 구분할 때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투자는 직접적인 사업운영이 아닌 금전적 이득만이 목적이므로 거주지 과세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은 실질적 투자자인

해외법인이 개입되지 않아 과세이연의 문제가 없다. 조세조약에서도 포트폴리오투자는 암묵적으로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과세함을 전제하고 있다. 사용료소득도 소득의 성격상 포트폴리오투자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논리로 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면세의 방법과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거주지에서 세금신고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할 수도 있는 반면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처럼 거주지에서 세금신고를 하되 해외에서 적극적인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원천소득 전액 또는 그 중 일부를 거주지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 밖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만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지에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면세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해외소득 면세제도가 저세율국을 통한 거주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면세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대상을 조세조약 체결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범위도 아직 조세회피 가능성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으므로 시행 초기에는 90% 정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배분과 관련하여 해외소득 면세제도하에서는 해외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간접비용을 거주지국 세액에서 공제하면 거주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면세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 차

| | |
|--------------------------------------|----|
| I. 서론 | 17 |
| II.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특징 | 23 |
|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23 |
| 2. 원천지주의 과세(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27 |
| 3. 거주지주의 과세의 특징과 문제점 | 31 |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31 |
| 나. 손금산입제도 | 37 |
| 4. 요약 및 시사점: 과세체계 전환의 검토 필요성 | 38 |
|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 40 |
| 1. 해외직접투자 현황 | 40 |
| 2.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45 |
| 가. 직접 사업소득(지점소득) | 46 |
| 나. 배당소득 | 50 |
| 다. 이자와 사용료 | 54 |
| 3. 거주지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57 |
| 가. 이진가격과세제도 | 57 |
| 나. 조세피난처 대응세제 | 59 |
|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61 |
| 1. 미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61 |

| | |
|-------------------------------|----|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61 |
| 나. 개편 논의 | 65 |
| 2. 일본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68 |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68 |
| 나. 자회사 배당 면세제도 | 72 |
| 3. 영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73 |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74 |
| 나. 배당소득 면세제도 | 76 |
| 4. 프랑스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77 |
| 5. 독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78 |
| 6. 호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79 |
| 7. 캐나다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81 |
| 8. 요약 및 시사점 | 83 |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 | |
|---------------------------------|-----|
| 및 효과 | 88 |
|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88 |
| 2.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 95 |
| 가. 거주지과세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95 |
| 나. 거주지과세와 해외직접투자소득의 환수 | 102 |
| 3. 과세제도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 107 |
| 가. 거주지과세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107 |
| 나. 해외배당소득 면세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129 |
| 다. 과세체계 전환과 이진가격 조작 유인 | 131 |
| 4. 조세제도 및 행정의 단순화 | 132 |
| 5. 소결 : 과세체계 전환의 필요성 | 133 |

| | |
|---|-----|
| VI. 정책제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방안 | 137 |
| 참고문헌 | 142 |

표목차

| | |
|---|----|
| 〈표 II-1〉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유형 | 25 |
| 〈표 III-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41 |
| 〈표 III-2〉 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41 |
| 〈표 III-3〉 우리나라 기업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 42 |
| 〈표 III-4〉 우리나라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 43 |
| 〈표 III-5〉 지역 및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액 | 44 |
| 〈표 III-6〉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46 |
| 〈표 III-7〉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51 |
| 〈표 III-8〉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체결국가 | 53 |
| 〈표 III-9〉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55 |
| 〈표 III-10〉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56 |
| 〈표 III-11〉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APA 현황 | 58 |
| 〈표 IV-1〉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62 |
| 〈표 IV-2〉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69 |
| 〈표 IV-3〉 영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75 |
| 〈표 IV-4〉 주요국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85 |
| 〈표 IV-5〉 OECD회원국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 | 87 |
| 〈표 V-1〉 각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25% 이상) | 97 |

| | |
|---|-----|
| 〈표 V-2〉 각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25% 미만) | 98 |
| 〈표 V-3〉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성지표 | 104 |
| 〈표 V-4〉 실효법인세율과 배당성지표의 상관관계 | 106 |
| 〈표 V-5〉 원천지 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116 |
| 〈표 V-6〉 해외소득 환수에 대한 세금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117 |
| 〈표 V-7〉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t_k = 25\%$) | 127 |
| 〈표 V-8〉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t_k = 20\%$) | 128 |
| 〈부표 1〉 해외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배당률 | 146 |

그림목차

| | |
|--------------------------------|-----|
| [그림 V-1] 법인세율과 배당성지표의 관계 | 105 |
|--------------------------------|-----|

I. 서론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를 원천지주의 과세, 후자를 거주지주의 과세라고 한다. 원천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는 소득이 궁극적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되는지, 외국인에게 귀속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동등하게 과세한다. 이와 달리 거주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거주지)에서 과세한다.

국제 투자와 관련하여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는 투자자금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므로 자금의 원천에 대해 중립적이며 이를 자본수입 중립적(Capital Import Neutral: CIN)이라고 한다. 한편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은 어느 곳에 투자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본수출 중립적(Capital Export Neutral: CEN)이다.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 즉, 생산의 극대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이론은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따를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의 적용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원칙적으로 거주지주의를 적용한다고 천명하고 있다¹⁾.

그러나 실제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들 또는 그에 준하는 저세율 국가들은 일찍부터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자수입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철저히 적용하더라도 적극적 사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active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모든 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온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적극적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 일본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NFTC(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를 선두로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 연방세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자문단(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등 의회와 자문기구에서도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²⁾.

최근까지도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거주지주의 과세를 고집한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직접투자 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해외에 누적된 일본인 및 일본기업 소득의 국내 환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현지 회사의 소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세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과세하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가 일본의 주주에게 소득을 배당하였을 때 비로소 일본 정부가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

1) 안중석·구자은(2006)

2) NFTC(2002), JCT(2008),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2005)

본의 투자자들은 해외발생소득을 일본으로 환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과세를 회피하게 된다. 2006년 잔고 기준 해외 자회사 등의 내부 유보액이 약 17조엔으로 추산되고 손자 회사 이하의 그룹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본이 환수되어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달리 활용된다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 환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2005년에는 당해연도 내에 해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면 5.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하였는데, 그 해에 환수된 해외소득이 2,170억달러로 2004년 350억달러의 6배를 증가하였다³⁾.

둘째, JCT(2008) 등은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고 있다.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이 사업활동을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다국적기업들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세후 소득을 본부가 있는 거주지국으로 환수하면 거주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현지 납부세액은 미국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현지 세액이 미국 세액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인접한 캐나다를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해외소득에 대해 거주지 세금을 면제하므로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현지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는 미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수출 중립성 관점에서 볼 때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는 기업의 투

3) Grubert and Altshuler(2006)

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한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할 경우 미국 기업이 자국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연구개발·기획 등 중요한 기능을 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의 본부를 국내에 유지하도록 조세정책 등을 통해 유인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완성품 회사를 해외에 설립할 경우 국내 부품회사의 해외 수출과 국내 연구개발 부문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세부담 완화가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확고한 결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는지 못하고 있다⁴⁾.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자본시장 균형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또한 자국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하였으며, 최근에는 적어도 직접투자과 관련해서는 원천지주의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는 개별 국가들이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세계경제의 효율성보다는 자국 경제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자본수출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 발생 즉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체계, 정보 수집 등으로 부득이 해외소득이 거주지로 환수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4) Grubert and Mutti(2001)는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과세가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 미국 연방세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자문단(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2005)에 의하면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1개국에서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해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세 측면에서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투자를 유리하게 만든다. 정보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 자본수출 중립성의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현실적으로 자본수출 중립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른 해법을 찾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과 다른 국가들의 동향,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활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 원천지주의 과세 제도로 전환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전환방향을 모색한다. 그동안 미국 등의 학계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가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원칙 재검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Ⅱ장에서 국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원칙 즉, 원천지주의 과세원칙과 거주지주의 과세원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본수출 중립성과 자본수입 중립성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최근에 원천지주의 과세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 새로 언급되는 자본소유권에 대한 중립성(Capital Ownership Neutrality: CON)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검토한다.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과세제도를 검토한다. 직접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는 물론 최근에 전환한 일본과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미국의 경우 현행 제도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제Ⅴ장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필요성을 검토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시 기대되는 효과를 파악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법인 자료를 활용하여 개편 시 기대되는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요약하여 전환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전환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특징

본장에서는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각 과세방법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국내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이중과세문제를 야기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관련된 국가들이 각각 과세하는 방법과 각 방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장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내용은 대부분 유사한 주제의 다른 보고서나 문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익숙한 독자들은 본장을 건너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내국인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와 달리 특별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과 소득을 가져가는 자의 거주지가 다른 과세 관할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A국 거주자가 B국에서 소득을 취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A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B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된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하여 과세목적상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 그

리고 과세목적상 자국 거주자가 아닌 자 즉,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국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득의 발생지에 초점을 맞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국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건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건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과세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록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속지주의 개념으로서 소득의 원천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원천지주의(source principle) 과세제도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소득을 취득한 자에 초점을 맞춰 자국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건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건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과세하며,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제소득 과세에 속인주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거주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 과세제도라고 한다.

모든 국가가 합의하여 거주지주의든 원천지주의든 어느 하나를 적용하고 투자자의 거주지(이하 '거주지') 또는 소득의 발생지(이하 '원천지') 구분이 명확하다면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 특유의 문제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의 발생지에 구애받지 않고 거주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상당히 다르다. 실제 적용되는 과세제도를 보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한다. 한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은 거주자에게도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를 포함하여 저세율 국가들이 주로

II.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특징 25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이자·배당 등 수동적 투자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더라도 해외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지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원천지 과세당국이 한 번 과세한 이후 거주지 과세당국이 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방식과 손금산입방식(deduction)으로 구분된다.

〈표 II-1〉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유형

| 과세원칙 ¹⁾ | 이중과세조정 | 국내소득 | | 해외소득 | | 총세부담 ²⁾ |
|--------------------|--------|------|------|------|------|----------------------|
|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원천지주의 | 국외소득면제 | 과세 | 과세 | 면세 | 비과세 | t_f |
| 거주지주의 | 세액공제 | 과세 | 과세 | 과세 | 비과세 | $\max(t_d, t_f)$ |
| | 손금산입 | 과세 | 과세 | 과세 | 비과세 | $t_f + (1 - t_f)t_d$ |

주: 1)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과세원칙

2) t_f 는 외국납부세액, t_d 는 국내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세액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양자의 차액만 거주지 국가에 납부한다. 외국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국내 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만 공제하며, 초과액의 환불은 하지 않고 국내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세액보다 적은 경우($t_f < t_d$)에는 해외투자에 대한 총납부세액이 국내 세액(t_d)

과 일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t_f)과 일치하게 된다.

손금산입방식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소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내 세액 계산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외국 세액의 세율이 t_f 이면 국외원천소득 중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부분 즉 $(1 - t_f)$ 만큼만을 국내 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국내 세율(t_d)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거주지 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1 - t_f)t_d$ 를 곱한 것이 되며,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세액을 합한 총세부담은 소득 한 단위당 $(t_f + (1 - t_f)t_d)$ 가 된다. 앞서 두 가지 방법은 경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한 단위에 대한 총세부담이 t_f 또는 t_d 가 되는 데 비해 손금산입방식은 총세부담이 t_f 보다 크고 t_d 보다도 크다. 이는 손금산입방식이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이 세 가지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국의 과세 제도로 적용하는데, 대체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으며,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두 번째 방법이 세 번째 방법에 비해 유리하므로 실제로는 전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한 국가에서 어떤 과세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국제조세의 경우 특히 세계경제의 효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세가 투자지역 결정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로 하여금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세계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국가간 투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국가경제의 이익도 조세제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이익은 앞서 언급한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충돌될 수 있다. 자본과 기술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자국에 외국인투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국가와의 세율 격차, 국제조세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할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세계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Hufbauer and Assa(2007)는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국가경제의 이익 외에도 세수입의 확보를 국제조세체계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수입의 확보가 세계경제의 효율성 제고나 국가경제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세수입의 확보에 있고, 국제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뿐만 아니라 주어진 세수입의 관련 국가간 배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국제조세제도의 설정에 세수입의 배분이 중요한 요소가 됨은 분명하다. 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세수입은 전액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귀속된다. 한편 거주지주의 과세의 경우 세수입의 일부가 거주지 국가에 귀속된다. 원천지 국가의 세부담이 크면 거주지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므로 자국(거주지국)의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세율 격차가 국가간 세수입 배분에 영향을 준다.

다음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와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로 구분하여 <표 II-1>에 정리된 3가지 과세방법에 대해 세계경제의 효율성, 국가의 이익, 세수입 확보의 3가지 측면에 대해 그 특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제2절과 제3절의 논의를 요약하고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한다.

2. 원천지주의 과세(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원천지주

의 과세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지 국가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원천지주의 과세하에서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에 대해 투자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므로 자본수입에 대해 중립적(Capital Import Neutral: CIN)이다.

국내투자에서 발생하는 세전수익률을 r_d ,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세전수익률을 r^* 라고 할 때 조세가 없다면 양자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균형이 달성될 것이다. 만약 국내 수익률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보다 높으면 자본의 유입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균형 상태에서 모든 투자재원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되어 세계경제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t_d 의 세율로, 원천지에서는 t_f 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r_d(1-t_d) = r^*(1-t_f)$$

따라서 양국의 세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 $t_d \neq t_f$ 이면 r_d 와 r^* 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투자가 양국의 세율 격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국 세율이 원천지국 세율보다 높으면 과다한 해외투자와 과소한 국내투자가 발생하며, 거주지국 세율이 원천지국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투자가 과다하게 되어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과다한 투자 또는 과소한 투자란 조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전 세계 생산극대화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규모보다 많거나 적은 것을 의미한다.

원천지주의하에서는 자국 세율을 경쟁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외국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저개발국의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조세경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른 국가도 모두 원천지주의를 적용하고 세율을 인하하면 저세율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국의 경제정책이 다른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원천지주의를 적용하고 국내 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물론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소규모 개방경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쟁국이 원천지주의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만 거주지주의를 유지할 경우 자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이 국제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고세율국 A의 기업과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저세율국 B의 기업이 각각 제3국인 C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B국 기업은 C국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데 비해 A국 기업은 C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 세후소득을 배당금으로 본국으로 환수할 때 A국 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Haufbauer and Assa(2007)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적극적 사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자국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자본수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는 고세율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저세율국으로 본부를

이전할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주요 자본수출국들로 하여금 원천지주의를 도입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원천지주의 과세적 성격을 갖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기업에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 유보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하면 거주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저하게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원천지 세액이 거주지 세액보다 많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과 거주지 세액의 차액을 환불하지 않아 원천지 세액이 최종적인 세부담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원천지주의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에 누적된 소득을 자국으로 환수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휴일제도를 적용한 적도 있다. 이와 같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들, 그리고 원천지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제도의 시행 등은 현실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가 이론적인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와 달리 자본수출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하게 검토한다.

조세가 국제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자원의 배분에 초점을 맞춰 자본수출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생산 등 적극적인 사업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원천지주의 과세는 국내투자보다 해외 저세율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투자와 해외투자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본부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영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등 본부에 부수된 사업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천지주의 과세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비판은 조세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원천지주의 과세하에서는 투자대상지의 세율에 의해

총세부담이 결정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세율이 낮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투자를 유치하여 자국 내에서 산업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세율인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경쟁은 경쟁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여 또 다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이에 대해 Conconi (2006)는 모든 조세경쟁이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여 법인세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되었는데, 그것은 과세기반 잠식보다는 효율적인 조세체계로의 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인세는 조세 중에서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다른 세목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면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원천지주의 과세의 또 다른 문제는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므로 자본 수출국의 세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거주지주의하에서도 과세이연과 기타 다양한 조세중재(tax arbitrage) 기회,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실제 세수입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자 등 수동적 투자와 사용료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를 유지한다면 직접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적용이 세수입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세하게 검토한다.

3. 거주지주의 과세의 특징과 문제점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거주지주의 과세는 자국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발생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서 원천지주의를 적용하고 거주지 국가에서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거주지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 부담을 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원천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세액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국내 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의 차액만을 국내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국내투자나 국외투자나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투자자는 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투자와 국외투자의 세전 수익률이 일치되도록 즉, $r_d = r^*$ 가 되도록 투자를 배분한다. 조세가 투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자본수출 중립적(Capital Export Neutral: CEN)이라고 하며, 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가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한 국가의 조세정책이 다른 국가의 조세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조세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하에서도 자본수출 중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대상지가 고세율국이어서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세액보다 많은 경우 자본수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과 국내 세액의 차액만큼을 환불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세수입 때문이다. 상황을 허용할 경우 투자대상국 세율이 높으면 자국의 다른 원천에서 발생하는 세수입 중에서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조세정책이 자국의 세수입을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세액보다 많으면 국외투자에 대한 세부담은 국내 세액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원천지주의 과세제도와 동일한 경

제적 효과가 나타나며, 자본수출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과세이연도 자본수출 중립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국외 투자를 할 때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그 현지법인은 투자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기업이 아니므로 현지법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권리가 없다. 현지법인 소득이 해외의 투자자 또는 모기업에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은 투자자 또는 모기업에 귀속되므로 비로소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현지법인의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 유보하거나 현지법인이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다면 그 자본이 최종적으로 배당금 등의 형태로 투자자 거주지국으로 환수될 때까지 거주지국가에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소득이 언젠가는 배당의 형태로 거주지국으로 환수된다고 가정하면 과세이연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소득의 환수율이 매우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배당금 외의 다른 형태(예, 청산소득 등)로 전환하여 거주지국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고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⁶⁾. 이는 거주지국 과세의 이연으로 인해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국내투자의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본수출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동적 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발생 즉시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 세율이 특히 낮은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발생 즉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피난처 대응세제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활용되고 있다⁷⁾. 그러나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서 실제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는 적극적 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방지할 효

6) 안중석·최준욱(2003)

7) FIF(Foreign Investment Fund) rule,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등

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다.

국가별로 과세체계가 다른 것도 자본수출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국가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설정이나 과세이연과 같은 원천지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주지주의 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책조합은 이론적인 논의 결과와는 달리 자본수출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자본수출 중립성 문제와는 별도로 '거주지주의 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정책조합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과 자국경제의 이익이 충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산기반이 미약한 저개발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생산 잠재력을 확충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자국 내 투자가 유리하도록 조세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한 세계경제 효율성 극대화 정책과 배치된다.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자국 경제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원천지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상태에서 자국에서만 거주지주의 과세를 철저히 고수하는 것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고세율국에 본부를 두고 국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 불리하다. 그러므로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고세율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저세율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견해는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이 어느 지역에 투자되는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업의 자본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는 주장이 있다. Dasai and Hines(2004)에 의하면 “기업은 그 기업을 통제하는 집단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더라도 경영기법, 전략, 물류시스템, 상표권, 저작권, 투표권 등 무형자산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자본소유권의 중립성(Capital Ownership Neutrality)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거주지주의 과세체제하에서 자본소유권의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본수출국이 세제조화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과세 현황은 이러한 방법이 현실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여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시 저세율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과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수출 중립성 외에 거주지주의 과세의 중요한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세수입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원천지주의는 국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데 비해 거주지주의는 거주자의 국외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세이연, 세액공제한도 초과 기업의 존재, 소득간 교차공제(cross-crediting)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세부담 절감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외투자자에 대해 거주지에서 징수하는 세수입이 극히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⁸⁾. 또한 Grubert(2001)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미국의 세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8) Altshuler and Grubert(2001)

- ① 적극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배당과 해외지점 소득)은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②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사용료와 이자소득은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 ③ 미국기업이 지배하는 현지법인의 수동적 투자소득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소득 발생 즉시 거주지국 세금을 과세한다.
- ④ 현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자 등 간접비용은 면세되는 해외투자소득에서 공제한다.
- ⑤ 연구개발비는 전액을 모기업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⑥ 적극적 해외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과 상쇄할 수 없다.
- ⑦ 미국의 수출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Grubert(2001)의 계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외직접투자 소득 즉,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과 현지 지점 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 면제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에서 연간 90억달러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용료소득, 수출소득, 이자소득 등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공제한도 초과 납부세액을 상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데,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여 이자와 사용료소득에 대해 미국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는 이자 등 현지 법인 운용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의 일부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모기업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데 비해 해외직접투자소득 면세제도에서는 면세되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면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므로 그만큼 미국 모기업의 손금산입액이 줄어들어 모기업의 세액이 증가한다.

나. 손금산입제도

거주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외국납부세액을 해외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모기업에서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의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은 국내 세부담과 해외투자 현지 세부담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의 세수입 분할은 원천지국의 세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제도는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로서 검토 대상이 된다.

손금산입제도의 경우 조세가 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수출의 중립성이 달성되지 않으며, 세계경제의 효율성 역시 달성하지 못한다. 그 대신 이 제도하에서는 국내투자에 대한 세부담(t_d)에 비해 해외투자에 대한 세부담($t_f + (1 - t_f)t_d = t_d + (1 - t_d)t_f$)이 높으므로 손금산입제도는 해외투자에 비해 국내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CIN, CEN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 제도를 NN(National Neutrality)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자의 비판을 받았고, 앞서 검토한 두 가지 제도에 비해 세부담이 높고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이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투자이익을 환수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세부담이 자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은 물론 과세기반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과세체계 전환의 검토 필요성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으로 원천지주의·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세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과세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중 세 번째 손금산입 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는 거주지주의 관점에서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자본수출 중립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의 존재, 과세이연의 가능성 등 제도 자체에 원천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 사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현지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 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원천지국 세액이 거주지국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과세이연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순수한 거주지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사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원천지주의적인 성격이 확대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지주의 과세를 고집하면서 자국의 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과세정책은 자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거주지주의 과세로 인해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로 이전된다면 연구개발 등 본사와 연계된 활동도 국외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기업의 지배권과 관련

II.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특징 39

된 자본소유권의 중립성(CON)이 중요시되고 있다. 자본소유권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외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 저세율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거주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원천지주의에 기반을 둔 해외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기 전에 거주지 과세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전환의 긍정적 효과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수입의 경우 해외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거주지 과세가 세수입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지 과세로 인해 얻는 세수입상의 이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rubert(2001)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유지하고 적극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 지점소득만 면세하고 면세대상이 되는 국외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면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비용배분원칙을 확립한다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더라도 세수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Ⅲ.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본장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역별·산업별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비교해 본다. 또한 이런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검토해 본다. 특히,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 및 사용료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명시한 과세방법을 살펴보고,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 규제와 관련하여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1.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기업들의 다국적화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투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990년대 약 5억달러였으나 불과 5년만인 1995년 말 30억달러를 넘었으며 2006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1년 후인 2007년에는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아직 작은 편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스톡 기준으로 2008년 10.3%로 1990년의 0.9%, 2000년의 5.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은 2008년 기준 26.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선진국과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41

개도국으로 나누어 보면, 2008년 각각 33.0%와 14.0%로 우리나라는 개도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개, %)

| | 1986~1990 | 1995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투자 | 4.7 (74.1) | 30.7 (33.4) | 69.5 (8.8) | 114.8 (65.1) | 214.1 (86.5) | 217.1 (1.4) |
| 신규법인 수 | - | - | 4,419 (16.6) | 5,217 (18.1) | 5,688 (9.0) | 3,998 (-29.7) |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III-2〉 세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 지역/경제규모 | |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해외직접투자(flow) | |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stock) | | |
|---------|---------|----------------------------|------|------|--------------------------|------|------|
| | | 2006 | 2007 | 2008 | 1990 | 2000 | 2008 |
| 한국 | inward | 1.8 | 0.9 | 2.8 | 2.0 | 7.1 | 9.8 |
| | outward | 3.0 | 5.2 | 4.7 | 0.9 | 5.0 | 10.3 |
| 유럽 | inward | 19.8 | 23.7 | 12.7 | 10.7 | 25.7 | 36.0 |
| | outward | 25.1 | 33.5 | 23.2 | 11.8 | 36.7 | 46.7 |
| 북미 | inward | 10.6 | 13.5 | 12.5 | 8.0 | 14.0 | 17.1 |
| | outward | 9.5 | 15.6 | 13.5 | 8.1 | 14.8 | 23.4 |
| 중남미 | inward | 11.4 | 14.1 | 13.5 | 9.6 | 21.5 | 23.5 |
| | outward | 7.5 | 3.6 | 4.2 | 5.3 | 5.9 | 7.4 |
| 아시아 | inward | 11.4 | 11.0 | 10.7 | 16.0 | 25.4 | 22.7 |
| | outward | 5.8 | 7.4 | 6.1 | 3.3 | 14.8 | 15.3 |
| 선진국 | inward | 13.4 | 17.1 | 11.4 | 8.1 | 16.1 | 24.7 |
| | outward | 15.9 | 22.8 | 17.9 | 9.5 | 21.1 | 33.0 |
| 개도국 | inward | 13.0 | 13.1 | 12.8 | 13.8 | 25.1 | 24.8 |
| | outward | 6.5 | 7.1 | 6.1 | 4.1 | 12.9 | 14.0 |
| 세계 | inward | 13.4 | 16.0 | 12.3 | 9.1 | 18.1 | 24.5 |
| | outward | 12.9 | 17.4 | 13.5 | 8.5 | 19.2 | 26.9 |

주: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자료: UNCTAD(2009)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투자주체별로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전년 대비 102.9%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68% 증가하였다. 다만, 2008년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해외투자가 예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액과 달리 투자 건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3〉 우리나라 기업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건)

| | 2005 | 2006 | 2007 | 2008 |
|-------------|------------------|------------------|------------------|------------------|
| 대기업 | 3,998 (279) | 7,183 (305) | 14,221 (390) | 14,969 (372) |
| 중소기업 | 2,288 (1,598) | 3,413 (1,955) | 5,863 (2,303) | 5,683 (1,846) |
| 개인기업 | 116 (448) | 130 (448) | 167 (406) | 92 (189) |
| 개인 | 550 (2,092) | 754 (2,509) | 997 (2,583) | 917 (1,588) |
| 기타(비영리단체 등) | 1 (2) | - | 162 (6) | 50 (3) |

주: () 안은 해외직접투자 건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별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광업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M&A형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43

〈표 III-4〉 우리나라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

|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 | | | |
| 제조업 | 5,422 | 47.2 | 8,063 | 37.7 | 6,767 | 31.2 |
| 도·소매업 | 1,208 | 10.5 | 2,033 | 9.5 | 3,625 | 16.7 |
| 광업 | 1,436 | 12.5 | 2,052 | 9.6 | 3,490 | 16.1 |
| 사업서비스업 | 381 | 3.3 | 3,012 | 14.1 | 1,778 | 8.2 |
| 부동산·임대업 | 804 | 7.0 | 1,529 | 7.1 | 1,646 | 7.6 |
| 기타 | 2,231 | 19.4 | 4,721 | 22.0 | 4,405 | 20.3 |
| 전체 | 11,481 | 100.0 | 21,411 | 100.0 | 21,712 |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투자대상국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홍콩에 대한 투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북미와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액보다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았다. 중남미 지역은 버뮤다와 케이만 군도 등 조세피난처들이 투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네덜란드가 2008년 기준 투자 상위 5개국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은 최근 현지 임금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홍콩은 상품종합중개업 투자와 부동산임대업 투자로 2008년 투자 금액이 2007년에 비해 거의 배 정도 증가하였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2006년까지 10억달러대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원유·천연가스 개발 투자, 전자상거래업 투자로 1위를 기록하였다. 유럽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 대한 해외투자가 가장 많으며, 네덜란드에는 백화점 투자, 노르웨이에는 비금융 지주회사 설립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지역 및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액

(단위: 백만달러, %)

| 지역 | 국가 | 2006 | | 2007 | | 2008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아시아 | | 6,283 | 54.7 | 11,040 | 51.6 | 10,809 | 49.8 |
| | 중국 | 3,380 | 29.4 | 5,300 | 24.8 | 3,762 | 17.3 |
| | 홍콩 | 856 | 7.5 | 1,253 | 5.9 | 2,489 | 11.5 |
| | 베트남 | 587 | 5.1 | 1,307 | 6.1 | 1,331 | 6.1 |
| | 인도네시아 | 148 | 1.3 | 253 | 1.2 | 535 | 2.5 |
| 북미 | | 2,195 | 19.1 | 2,599 | 12.1 | 5,097 | 23.5 |
| | 미국 | 1,805 | 15.7 | 3,454 | 16.1 | 4,933 | 22.7 |
| | 캐나다 | 390 | 3.4 | 145 | 0.7 | 164 | 0.8 |
| 유럽 | | 1,213 | 10.6 | 4,371 | 20.4 | 2,988 | 13.8 |
| | 네덜란드 | 124 | 1.1 | 625 | 2.9 | 641 | 3.0 |
| | 노르웨이 | - | - | 792 | 3.7 | 486 | 2.2 |
| | 러시아 | 113 | 1.0 | 226 | 1.1 | 358 | 1.6 |
| 중남미 | | 1,213 | 10.6 | 1,464 | 6.8 | 1,617 | 7.4 |
| | 버뮤다 | 650 | 5.7 | 326 | 1.5 | 527 | 2.4 |
| | 파나마 | 59 | 0.5 | 172 | 0.8 | 241 | 1.1 |
| | 멕시코 | 59 | 0.5 | 119 | 0.6 | 237 | 1.1 |
| 오세아니아 | | 193 | 0.2 | 539 | 2.5 | 730 | 3.4 |
| 아프리카 | | 214 | 1.9 | 239 | 1.1 | 292 | 1.3 |
| 중동 | | 170 | 1.5 | 158 | 0.7 | 179 | 0.8 |
| 전 체 | | 11,481 | 100.0 | 21,411 | 100.0 | 21,712 |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국내세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가와 거주지국가에서 각각 과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중과세 조정방식은 국내세법에 규정하여 투자 상대국의 제도에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국 거주자의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으며, 양국간 조세 조약을 통해 투자 상대국과 합의된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조세조약만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약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시행규정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손금산입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손금산입방식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보다 불리하므로 손금산입허용규정은 명목상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우리나라의 납세자가 아닌 해외 현지법인이 납부한 세액도 우리나라의 납세자가 납세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에서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세액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표 III-6〉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구 분 | 과세제도 | 근거조항 |
|-------------------------|-----------------------------|--|
| 외국납부세 액공제제도/ 손금산입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국제 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
| 조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 |
| 조세회피 규제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 제17~제20조 |
| | 이전가격 과세제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장 제4~제13조 |

다음에서는 지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살펴본다. 이들 제도는 국내법과 조세조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로 국내법과 조세조약에 규정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거주지국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와 조세피난처 대응 세제에 대해 정리한다.

가. 직접 사업소득(지점소득)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자회사 또는 지점 등의 설치를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로부터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47

여 모회사 또는 본점이 소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가진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이 취득한 국외원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 국세법인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이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⁹⁾.

세액공제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손금산입방법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법인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의 손금 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외국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한도 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¹⁰⁾.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조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 의 조세 즉,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서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세, 판매세, 거래세, 관세 등과 같은 기타의 외국세액과 벌금 성격이 강한 가산세, 가산금 등도 공제 가

9)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10)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능한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국내 세액의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법인세액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text{세액공제한도액} = \text{법인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그러나 조특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세액공제한도액} &= \text{법인세액} \\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면제} \cdot \text{세액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end{aligned}$$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일괄한도제는 모든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을 하나로 합하여 한도를 계산하므로 고세율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고 저세율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미달하는 경우 양자를 통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세율의 평준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별한도제에 비해 일괄한도제가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과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49

세표준으로 산입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¹⁾.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²⁾.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투자 중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외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 투자 또는 출자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세액공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특정 투자 및 출자에 대해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에서 공제하여 이루어진다³⁾.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12)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나. 배당소득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는 현지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후 소득을 국내의 모기업에 배당하면 배당을 지급받는 모기업은 그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에서 요구하는 국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국내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이다.

모회사인 국내기업이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입배당금액(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된 경우 그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조세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 납부한 배당원천징수세(직접납부세액)와 현지법인이 원천지에 납부한 법인세(간접납부세액)를 공제할 수 있다¹⁴⁾.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회사를 말한다¹⁵⁾.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14)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은 내국법인에 한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51

〈표 III-7〉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체약국 | 제한세율 |
|--|--|
|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호주,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인도, 터키 | 15%(단, 인도와 터키는 기타: 20%) |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피지,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파키스탄, 필리핀 | 10%, 기타: 15% (단, 파키스탄은 기타: 12.5%, 필리핀은 기타: 10%) |
| 미얀마, 브라질, 베트남, 요르단, 쿠웨이트, 태국 | 10% |
|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 7%(단 루마니아는 기타: 10%) |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몰타공화국,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캐나다 | 5%, 기타: 15% |
| 러시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이스라엘, 오만, 중국, 칠레,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UAE | 5%, 기타: 10% |
| 네팔 | 5%, 10%, 기타: 15% |
| 몽골 | 5% |

외국법인세액으로 세액공제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산출식에서 공제율은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100%를 적용하고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공제한다.

$$\begin{aligned} & \text{외국 자회사의 해당} \\ \text{간접외국납부세액} &= \text{사업연도 법인세액} \\ &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times \text{공제율} \\ & \quad \text{사업연도 소득금액} \quad \text{사업연도 법인세액} \end{aligned}$$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회사를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2008년 2월부터 외국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다¹⁶⁾.

외국손회사의 수입배당에 대해 간접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며,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해야 한다¹⁷⁾¹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법인주주가 외국법인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 허용된다¹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원천지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거주지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법 제57조 제3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17) 간접소유비율 =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0항

19) 소득세법 제56조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53

항에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천지에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대체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지 않으나 개도국과의 조약에서는 주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I-8〉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체결국가

| 체 약 국 | 서 명 일 | 체 약 국 | 서 명 일 |
|-----------|-------------|---------|--------------|
| 그 리 스 | 1965. 3. 20 | 이 집 트 | 1992. 12. 9 |
| 네 팔 | 2001. 10. 5 | 이 탈 리 아 | 1989. 1. 10 |
| 말 레 이 시 아 | 1982. 4. 20 | 인 도 | 1985. 9. 19 |
| 모 로 코 | 1999. 1. 27 | 인도네시아 | 1988. 11. 10 |
| 멕 시 코 | 1994. 10. 6 | 요 르 단 | 2004. 7. 24 |
| 방글라데시 | 1983. 5. 10 | 중 국 | 1994. 3. 28 |
| 불 가 리 아 | 1994. 3. 11 | 체 코 | 1992. 4. 27 |
| 브 라 질 | 1989. 3. 7 | 쿠 웨 이 트 | 1998. 12. 5 |
| 베 트 남 | 1994. 5. 20 | 터 키 | 1983. 12. 24 |
| 싱 가 포 르 | 1979. 11. 6 | 태 국 | 2006. 11. 16 |
| 스 리 랑 카 | 1984. 5. 28 | 튀 니 지 아 | 1988. 9. 27 |
| 슬로바키아 | 2001. 8. 27 | 파 키 스 탄 | 1987. 4. 13 |
| 아 일 랜 드 | 1990. 7. 18 | 파푸아뉴기니 | 1996. 11. 23 |
| 우즈베키스탄 | 1998. 2. 11 | 포 르 투 갈 | 1996. 1. 26 |
| 이 스 라 엘 | 1979. 3. 18 | 피 지 | 1984. 2. 21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²⁰⁾.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일반 해외투자보다 자본의 회임기간이

20) 조특법 제22조

장기이므로 자원보유국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되며,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자와 사용료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와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이중과세의 공제에 있어서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손금산입도 허용된다.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앞서 설명한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된다.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이자와 사용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지급총액 즉 수입금액이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나타난 이자와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표 III-9>와 <표 III-10>에 정리된 바와 같다.

II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55

〈표 III-9〉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채약국 | 제한세율(이자소득) |
|--|---|
| 노르웨이, 덴마크,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호주 | 15% |
| 네덜란드, 브라질, 스웨덴, 이집트 | 7년초과차관: 10%, 기타15% |
| 태국 | 금융기관: 10%, 기타: 15% |
| 필리핀 | 공모공사채이자: 10% , 기타 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
| 인도 | 은행: 10%, 기타: 15% |
| 칠레 | 은행 및 보험회사: 10%, 기타: 15% |
| 터키 | 2년초과: 10%, 기타: 15% |
| 멕시코 | 은행: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15% |
| 파키스탄 | 12.50% |
| 미국, 튀니지아 | 12%(튀니지아 7년 이상 은행 채무면제) |
| 네팔,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라오스, 미얀마, 모로코, 몰타공화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벨기에,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알제리, 일본, 영국, 요르단, 중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피지, 핀란드, 체코, UAE | 10% |
|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 그리스 | 8% |
| 이스라엘 |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 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면제 |
| 베네수엘라 | 은행: 5%, 일반이자: 10% |
|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오만,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몽골 | 5% (단 몽골은 자연벌과금 제외) |
| 러시아, 아일랜드, 헝가리 | 0% |

〈표 III-10〉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체약국 | 제한세율(사용료소득) |
|---|--|
| 브라질 | 상표권: 25%, 저작권: 10%, 기타: 10% |
| 네팔, 싱가포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튀니지, 호주, 필리핀 | 15%(단, 필리핀투자촉진법: 10%) |
|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 기타: 10%, 저작권: 15% |
| 말레이시아 | 기타: 10%, 저작권: 15% (학술저작권: 10%) |
| 덴마크 | 산업적 투자: 10%, 기타: 15% |
| 미국 | 저작권필름: 10%, 기타: 15% |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멕시코,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리랑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일본, 이탈리아, 요르단, 중국, 피지, 파푸아뉴기니, 캐나다,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체코 | 10% (단, 체코 저작권사용료 면제, 슬로바키아 학술작품저작권면제) |
| 태국 | 방송테이프 등: 5%, 상표권 등: 10%, 산업용장비: 15% |
| 미얀마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대가: 10%, 기타: 15% |
| 룩셈부르크 |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 정보: 10%, 기타: 15% |
| 베트남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5%, 기타: 15% |
| 루마니아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7%, 기타: 10% |
|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사용: 5%, 기타: 10% (단, 칠레 기타: 15%) |
| 모로코 | 저작권사용료 등: 5%, 기타: 10% |
|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스트리아 | 상업적, 산업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 2%, 기타: 10% |
| 오만 | 8% |
| 불가리아, 벨라루스, 라오스,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 5% |
|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독일, 영국 | 장비사용: 2%, 기타: 5%(독일, 영국 기타: 10%) |
| 몰타공화국, 헝가리,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 0% |
| UAE | 국내세법 적용 |

3. 거주지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 등 국내세법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이전가격과세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가격과세 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제도' 라고 한다. 즉, 특수관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종속관계와 실질에 의한 종속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또는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등도 해당된다.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국조법 제2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는 전통적인 거래가격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 있고, 거래이익방법으로는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는 특정거래에 맞는 국조법상 최적방법원칙 규정에 따라 전통적 거래가격방법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거래이익방법은 비교가능거래를 현실적으로 찾기 힘든 전통적 거래가격 방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통적 거래가격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거래이익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2008년까지 국세청에서 처리한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pprovals) 중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 106건 중 86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1〉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APA 현황

(단위: 건)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일방 APA | 쌍방 APA | 합계 |
|-------------|--------------|--------|--------|-----|
| 전통적 가격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 | 1 | 1 |
| | 재판매가격법 | - | 5 | 5 |
| | 원가가산법 | 4 | 1 | 5 |
| 거래이익법 | 이익분할법 | 3 | 1 | 4 |
| | 거래순이익률법 | 41 | 45 | 86 |
| | 영업이익률법 | 18 | 22 | 40 |
| | 총원가가산법 | 5 | 4 | 9 |
| | 부가가치원가 가산법 | - | 1 | 1 |
| | 자산수익률 | 2 | 1 | 3 |
| | Berry Ratio | 16 | 17 | 33 |
| 기타 | 기타 합리적인 방법 | 2 | 3 | 5 |
| 합 계 | | 50 | 56 | 106 |

주: 2008년까지 국세청에서 처리한 APA 건수 누계
 자료: 국세청(2009).

앞서 언급한 APA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

Ⅲ.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59

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이다(국조법 제6조). 정상가격 산출은 매우 애매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전가격과세제도로 인해 납세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APA제도는 이러한 납세자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납세비용 경감 등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조법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자 개입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로 위장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경우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용한다. 상계거래에서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해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용한다.

채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국조법 제10조). 이런 대응조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발생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나. 조세피난처 대응세제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에서 다루고 있다.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내국법인이 조세부담이 없거나 조세부담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 유보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한 것으

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다국적기업 등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과세이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국조법 제17조).

국조법에서 '조세피난처'라 함은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②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모나코(Monaco), 안도라(Andorra)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은 ①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② 동 외국법인에 거주자(내국법인)가 출자하여야 하며 ③ 동 외국법인과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직·간접으로 출자한 거주자(내국법인)로 규정하고 있다²¹⁾.

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조세가 경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공회사(paper company)가 아니라 고정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세회피에 용이한 업종이거나 사업 성격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업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한다.

21) 거주자(내국법인)가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지분을 분산하여 20%기준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지분을 판단할 때는 민법 제779조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포함한다.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본장에서는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주요국들의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주요국으로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 원천지주의 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조세조약 대상국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독일, 호주,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캐나다가 그 대상이다.

1. 미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미국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해 가장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정액 이하의 해외근로소득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비용에 대해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²²⁾.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은 미국 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해 국내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자본수출 중립성, 즉, CEN(Capital Export Neutrality)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 과세연도마다

22) IRC Sec.911(a).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²³⁾. 그밖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개인서비스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연부금 면세, 교육자와 학생에 대한 면세, 자본세액공제 등이 있다. 해외소득의 신고방식도 국내소득과 동일하다.

〈표 IV-1〉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 |
|------|---|
| 공제대상 | ① 직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정부가 소득세 또는 소득세 대신 부과한 세금 |
| |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 의결권 10%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 · 외국자회사가 1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미국 모회사가 5% 이상의 의결권을 간접보유한 손회사 · 증손회사로 부터의 배당 - C 법인(Chapter C)으로 한정 · 간접외국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frac{\text{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소득}}$ |
| 공제한도 | - 한도설정방법: 소득유형별(수동적소득, 일반소득) 한도설정, 국별 일괄한도 · 공제한도액 = 미국 법인세 산출액 × $\frac{\text{국외원천 과세소득}}{\text{전세계 과세소득}}$ - 한도초과액: 1년 소급공제, 10년 이월공제 |

미국 납세자는 과세기간 동안 외국에서 부과된 공제 가능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손금산입은 외국세액만큼 이중과세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납부세액에 거주지 세율만큼만 이중과세가 완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방식

23) IRC §901(a), 개인은 Form 1116, 법인은 Form 1118을 통해서 선택한다.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개별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하여야 한다(IRC §703(b)(3)).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63

에 의한 감면 효과가 손금산입방식의 경우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액공제방식을 선호한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부터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 금액이 증가하고 손실의 이월공제기간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⁴⁾.

1)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해당 소득이 미국의 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도 소득세 대신 부과한 것이면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은행업 및 석유산업 등과 같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납세자(비거주자)의 경우에 발생한다. 미국 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은 배당, 이자, 로열티와 관련 소득이 미국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귀착되는 경우, 미국 사업장이 소득 창출에 실질적 요인이 된 경우, 미국 사업장의 일반 사업활동으로 창출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미국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Deemed paid credit)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Deemed paid or indirect credit)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에 외국자회사 소득총액에서 미국 기업에 배당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다²⁵⁾.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간접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미

24) 손실(NOL)의 공제기간은 전기 2년 차기 20년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은 전기 1년 차기 10년이다.

25) <표 IV-1> 참고.

국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그 과세소득에 미국 세율을 곱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한다. 미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 손회사, 증손회사의 3단계까지 적용된다. 각 단계별 회사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직접 소유해야 하고 미국 모회사는 각 단계별 회사에 적어도 의결권의 5% 이상을 간접 소유해야 한다.

2) 세액공제 한도와 기간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총과세소득에서 해외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 소득세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그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미국은 자국과 외국의 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국내 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에 한도를 두고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전 세계 과세소득에서 국외원천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미국소득 세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은 국외원천과세소득에 미국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다.

$$\text{공제한도액} = \min \left\{ \text{외국세액}, \text{미국소득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전 세계 과세소득}} \right\}$$

2005년까지는 공제한도의 설정 시 외국소득을 소득의 성격에 따라 9개의 바스켓(basket)으로 구분하여 각 바스켓별로 공제한도를 계산하였으나, 고용 창출법(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을 통해 소득을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과 일반소득(general incom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계산방식을 단순화하였으며 200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²⁶⁾.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65

각 소득유형에 속하는 과세소득을 결정하려면, 소득과 관련된 비용, 손실 및 기타 공제항목을 각각의 소득에 배분하여야 한다. 수동적 소득이란 직접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royalty) 등과 같은 투자소득을 말한다. 수동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일반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대료와 사용료의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수동적 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에 포함된다.

2004년 시행된 고용 창출법(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 AJCA)에서는 공제기간에 대해서도 이미 과세된 금액에 대해 5년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소급공제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이 인정되며 공제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개정으로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일부(deemed-paid FTCs) 간 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개편 논의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현행 해외소득에 대한 거주주의 과세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개편 논의의 시발점은 과세이연이다.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은 배당 등의 형태로 국내로 환수될 때에만 과세되는데, 기업들은 그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소득을 현지에 유보하여 투자 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소득 환수율이 매우 낮다는 자료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26) 9개의 바스켓: ① 수동적 소득, ② 고세율이자소득, ③ 금융서비스소득, ④ 해운업 소득, ⑤ 소유자본율 10~50%인 해외 자회사 소득, ⑥ DISC(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로부터의 배당, ⑦ 국제 무역소득에 귀속되는 과세소득, ⑧ FSC(Foreign Sales Corporation)로부터의 배당, ⑨ 그 외의 소득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첫째는, 공정성(fairness)이다. 과세이연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 세액을 회피할 수 있다면 세부담 차원에서 국내투자자에 비해 저세율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유리하게 되어 투자배분을 왜곡시킨다. 둘째는, 해외소득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해외에 유보하는 것 자체가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해외소득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해외에 유보하거나 세금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 세금 절감 전략(tax planning)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로 환수되지 않은 자금은 해외에서 투자해야 하므로 이러한 제약이 없는 상태에 비해 투자배분이 왜곡되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환수되든 현지에서 유보되든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이연이 불가능하도록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거나 또는 아예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여 원천지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국회의 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에서 2005년에 보고한 자료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한쪽으로는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중 Peroni(2001), Rosenbloom(2001), Sullivan(2006), Repetti(2007) 등은 첫 번째 방향 즉,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과세이연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실효세부담이 국내투자자의 경우보다 낮아지면 과세의 공정성이 저해되며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유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 의하면 해외투자자에 대한 국내 과세를 면제하여 해외소득의 국내 환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 간의 세부담 격차를 고착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여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도 발생 즉시 거주지에서 과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67

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osenbloom(2001)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를 강화하고,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대상국을 '정상(normal) 과세국'과 '저세율국'으로 구분하여 저세율국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고 정상 과세국에 대해서는 해외소득 면세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들이 거주지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거주지 과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현지 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큰 국가 또는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세율수준이 상당히 높아 거주지에 납부할 세금이 매우 적은 국가들은 정상 과세국으로 분류하여 해외소득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여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 간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Grubert and Mutti(2001), Altshuler and Grubert(2001), Desai and Hines(2004),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2005) 등은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미국과세의 면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가 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연구개발, 경영전략의 수립 등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본부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들은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폐지하더라도 국내투자가 해외의 저세율국 투자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으며, 국내 세수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직접투자소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Hufbauer and Assa(2007)는 포트폴리오투자자와 직접투자를 구분하여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주의를 강화하고 직접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고 과세이연의 가능성도 낮아 앞서 언급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 과세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2. 일본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사이의 과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면세하고 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종류에는 직접외국세액공제, 간접외국세액공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간주외국세액공제가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에 특정목적회사, 투자법인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공제한도 결정과 관련하여 일괄한도액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외국법인세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 국외소득의 90% 한도 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국내 세액을 공제한다. 일본에서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의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도민세 포함)의 법인세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제 여유액의 이월 사용 및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각각 3년이다.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6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6개월간 보유 지분소유비율이 25% 이상인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까지 인정되며 외국증손회사 이하의 이익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자회사 및 손회사의 지분소유비율을 25% 미만으로 완화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본은 특정 개발도상국과의 조세 조약을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IV-2〉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 |
|------|--|
| 공제대상 | ① 직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의 조세로서 법인소득 또는 이를 대체하는 것에 과세된 세금 · 초과이윤세 및 기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소득 대신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 |
| |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수취배당에 해당되는 부분 - 외국자회사: 지분을 25% 이상을 6개월간 직접 보유 - 외국손회사: 외국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25% 이상을 6개월간 간접 보유 |
| | ③ 간주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이 체결된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감면된 외국 법인세액 |
| 공제한도 | - 한도설정방법: 일괄한도 · 한도액 = 법인세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소득}}{\text{전 세계소득}}$ · 국외소득은 전 세계소득의 90%를 한도로 함 - 한도초과액: 3년 이월공제 |

1)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외국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내국법인의 본점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내국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세는 외국에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의 소득 또는 소득을 대신하는 것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①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 ② 초과이윤세 기타 소득의 특정부분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 ③ ①과 ②의 부가세액, ④ 징수편의를 위하여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 ⑤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해당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5% 이상의 주식 등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소유한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한 외국손회사의 간접소유비율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25% 이상인 경우 이로부터 수령한 배당 등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 중 배당 관련 부분을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추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한도의 계산, 이월공제한도 초과 외국세액의 이월공제·소급공제 등은 직접공제제도와 구별 없이 함께 적용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원천지국의 국내법 및 조세조약에 의해 감면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인 모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과 동일하며, 단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인지 아니면 원천지국에서 감면되어 실제 납부되지 않은 세액인지에만 차이가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특정 개발도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특정 개발도상국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 등을 목적으로 투자 유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71

치 등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했을 때 조세감면의 효과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의 세수입 일부가 일본의 세수입으로 이전되어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2) 세액공제 한도와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일본 국내 세액이 되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시기에 공제한다. 이는 과세원인이 되는 국외소득의 발생 시기에 대응하여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은 공제대상이 되는 모든 외국 법인세 등의 금액에 대해 모든 국외원천소득을 일괄 합산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일괄한도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괄한도액방식은 고세율국과 저세율국의 납부세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율을 평준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에서는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전 세계소득의 90%를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외원천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과 국내원천소득을 합친 전 세계소득의 크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중 일부가 공제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의 1/9에 미치지 못하면 국외원천소득 중 일부가 공제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 전액이 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된다. 즉,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비해 일정 수준(1/9)이하로 작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일정부분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이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시점과 해당 외국 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월공제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액에 미달하거나 혹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여유액 또는 공제한도 초과액을 3년에 걸쳐 이월사용 또는 이월공제할 수 있다. 납부한 외국세액이 일본의 실효세율 수준을 초과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초과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 대신 손금산입만 가능하다. 자국의 실효세율 수준 이상으로 납부한 외국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넘어서 자국의 세수입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자회사 배당 면세제도

일본은 1953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후 1962년 일본의 내국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 법인세를 일본의 모회사 법인세로부터 공제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세액 공제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괄한도액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주민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해외에서의 기업경영 효율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기업의 재편성을 행하고 현지에 기업그룹을 관리·운영하는 총괄자회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실제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손회사)를 두는 사업형태가 과세상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3년 세제개정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을 손회사까지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기업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손회사 이하도 간접외국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2009년 초에는 적극적 사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국외소득에 대해 일본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 4월 1일부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를 채택한 것이다.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란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이 국내로 되돌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73

아오도록 하기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신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25% 이상을 배당 등의 지분의 무가 확정되는 날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금액에서 5% 상당액은 배당과 관련된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제외하고 배당 등의 금액의 95%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해외에 누적된 일본인 및 일본기업 소득의 국내 환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해외자회사 이익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해외 그룹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약 1.6배 증가에 그쳐 해외 자회사에서 매년 고액의 이익이 내부유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6년 잔고 기준으로 이들 해외 자회사 등의 내부유보액이 약 17조엔으로 추산되고 손자회사 이하의 그룹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로 환수되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되는 거액의 유보이익을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국내로 환수함으로써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달리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면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3. 영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영국은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이 영국일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러나 거주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거주자(ordinary resident)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²⁷⁾. 또한 통상적인

거주자 여부 이외에 영국 내에 주소지 여부, 영국 국민 여부 등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져서 매우 복잡하다²⁸⁾. 다만, 영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2009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면세하고 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영국은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과세공제매뉴얼(Double Taxation Relief Manual)이라는 지침서를 통해 이중과세의 공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조세조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며 영국 거주자는 손금산입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영국 거주자라도 영국 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resident but not domiciled) 통상적인 거주자가 아닐 경우(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에는 해외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을 적용한다.

2008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2,000파운드 이상의 손금산입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당국에 손금산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다. 손금산입을 신청할 경우 손금산입수수료(RBC: Remittance Basis Charge)를 납부해야 한다²⁹⁾.

27) 영국에서 1년에 183일 또는 그 이상을 거주한 자, 영국을 방문하고 적어도 4년 연속 1년간 방문일수가 평균 91일 또는 그 이상인자를 거주자로 정의하고 그 외에는 비거주자이다.

28) 영국 국민은 UK, 북아일랜드, 영연방제국 또는 식민지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여기에 귀화한 자를 말한다(1948년 국적법 일반규정 제1조).

29) 손금산입수수료는 18세 이상, 과세연도 9년 중 적어도 7년 이상 영국 거주자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에 3만파운드가 부과되며 수수료 그 자체가 소득세와 자본취득세 성격에 갖는다.

〈표 IV-3〉 영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 |
|------|---|
| 공제대상 | ① 직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의 조세로서 법인의 소득 또는 그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초과이윤세 및 기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소득 대신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 |
| |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 및 계열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수취배당에 대응하는 부분 - 외국자회사 : 지분을 10% 이상 보유 - 외국계열사 :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모회사의 의결권 보유 |
| | ③ 간주의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이 체결된 특정국에서 감면된 외국 법인세액 |
| 공제한도 | - 한도설정방법 : 국가별, 소득별 구분 공제한도액 = 법인세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 과세소득}}{\text{전 세계 과세소득}}$ · 국외원천 배당소득은 전 세계소득의 90%를 한도로 함 - 한도초과액 : 무제한 이월공제 |

영국의 분류과세제도(scheduler system)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외소득 항목은 거래이익, 조정이익, 재산권의 이익, 국외자산소득, 이자, 비거주자인 회사로부터의 배당, 종신연금 수취액, 과다 할인된 주식으로부터의 이익, 외국배당쿠폰의 판매소득, 로열티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득, 필름과 레코드 음원, 장거리 통신권, 부동산소득, 다른 소득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연간 지불액, 그 외의 소득 등이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직접적인 자회사 경우에 인정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손회사와 기타 계열사도 포함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한도의 계산, 한도 초과 외국세액의 이월공제·소급공제 등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구별되지 않고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 구분에 의해 계산되며 분류과세 제도(schedular system)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외소득 항목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소득별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영국 내의 세액이 된다. 국외원천 배당소득은 전 세계소득의 90%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 중 배당 관련세가 9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특정 연도에 납부하는 외국 법인세를 그 해의 외국소득에 기초하여 계산한 공제한도액 내에서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납부기준에 따른 외국 법인세와 발생기준에 의한 공제한도액 간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 법인세에 대해 1년의 소급공제를 인정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 법인세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월공제는 동일 소득원천에서만 가능하다.

나. 배당소득 면세제도

영국은 2009년 예산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담은 Finance Bill 2009를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해외소득 중 배당에 대해 과세면세제도를 도입하였다³⁰⁾. 이 개정안은 2009 예산안(Budget 2009)의 경제위기에 따른 지원정책 중 하나로도 발표된 바 있다.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배당에 대한 과세면세제도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로 영국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당소득 면세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한 배당 중 과세면세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적

30) Finance Bill 2009 Clause 40, Schedule 19

격지역(qualifying territory)으로 정의한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대부분 적격지역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6개국에 대해서는 과세면세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³¹⁾. 이들 비적격지역(non-qualifying territory) 국가 내에서 국제투자자에 관한 법률 또는 역외사업활동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국제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배당소득 면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프랑스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프랑스는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 거주자는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외 거주자라고 해도 소득의 원천이 프랑스일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등하게 과세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프랑스에 과세 의무를 가진다. 법인의 경우에는 프랑스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방법은 외국소득 면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및 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 프랑스 세금이 과세되고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 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에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상 적용대상 조세이어야 하며, 프랑스 거주자가 취득한 프랑스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31) Non-qualifying territory(Excluded companies): Barbados(International Business companies Act(s)), Cyprus(Cyprus enactments), Jamaica (Enactments relating to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ies and International Finance Companies), Luxembourg(Luxembourg 1929 and 1937 Acts), Malaysia(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Act 1990), Malta(various enactments)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국가별로 계산되며 그 소득이 프랑스에서 과세되는 세율을 한도로 공제된다.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손금산입은 가능하다.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은 조세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프랑스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국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때 프랑스 회사는 면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과세가 면제된 국외 원천소득에 따른 비용은 손금산입되지 않고 국외원천 손실도 계상할 수 없다.

5. 독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독일은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캐나다처럼 면제와 공제의 결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소득세법 제34c조와 법인세법 제26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조세조약의 유무에 상관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국가별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었다면 면제하며, 지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이자, 배당, 로열티와 자본이익, 부동산소득 등도 포함된다.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포트폴리오 소득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그 소득에 대한 외국원천세는 국가별 한도를 가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지점소득에 대한 면제 조건은 조세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외국에서 수취하는 소득이 그 외국에서 과세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조약을 체결한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독일 회사가 받은 배당도 독일 과세가 면제된다.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79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면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국가별로 계산되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세액공제의 한도액은 독일의 소득세에 외국소득이 전 세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것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 납부세액은 독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선택할 때 그 납세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국외원천소득이나 그 국가들에 대하여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액} = \text{독일 소득세율} \times \frac{\text{국외소득}}{\text{전 세계소득}}$$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구분되어 소유 지분율이 10% 미만일 경우 독일에서 과세되고 외국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유 지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면세와 공제가 결합된 방식을 적용한다. 즉, 외국회사가 독일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배당에 대한 독일과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외국자회사가 개발도상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독일의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독일회사의 소유지분율, 조세조약의 유무, 외국회사의 개발도상국 거주자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6. 호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호주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거주자

는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 호주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특정 국가(listed country)에서 과세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호주과세를 면제한다. 면세대상 사업소득은 우선 면세대상 국가에서 수취한 외국 지점의 소득, 포트폴리오투자를 제외한 해외투자로부터의 배당소득 중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경우의 배당소득이 해당된다. 면세대상 사업소득에는 호주 회사의 사업 관련 자산이익까지 포함된다. 자산관련 이익에 대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대상 국가의 고정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상각 자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세금이 부과된 이익이어야 한다.

호주는 The Tax Laws Amendment Act 2007을 통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설정 시 소득별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일괄한도액방식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공제한도 초과액과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손금산입도 허용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내원천소득과 달리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4종류로 분류한 규정 등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달리 규정한 사항들을 폐지하였으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분류 규정 또한 폐지하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는 실질적으로 호주의 소득세와 동일하며,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으로 인한 정정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신청 시 환율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호주달러로 계산한다.

호주의 개인 거주자가 외국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은 호주에서 과세되고 배당에 대한 국외원천세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호주회사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와 공제가 결합된 방식이 적용된다. 즉, 조세조약에서 면세를 규정한 경우 면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한다. 호주회사가 1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외국회사로부

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외국회사의 거주 여부, 납세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법인일 경우 지분의 규모, 외국회사의 소득이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이나 FIF(Foreign Investment Fund) 규정을 따르는 호주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³²⁾.

7. 캐나다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캐나다는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해외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면세되는

32) 호주의 CFC규칙은 호주의 거주자가 통제할 수 있는 외국회사에 의하여 얻어진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회사가 호주거주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회계연도 말에 5명 이하의 호주 거주자(그 거주자들은 적어도 1% 이상의 지분을 소유)들이 자본에 대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 공헌이익의 50%를 결정하는 경우
- 4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거나 호주 과세당국이 5명 이하의 호주 거주자가 지분율이 50% 이하임에도 외국회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CFC의 거주지국의 PE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GAAP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수동소득(passive income)이 전체 수익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소득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동소득은 호주에 귀속된다.

FIF측정방식은 CFC규정의 적용대상이 적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사업과 관련된 외국회사의 이자는 면제된다. 두 가지의 선택적인 TEST가 이 면제의 적용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대차대조표방식은 회사자산의 자세한 조사에 근거한다. 총자산가치의 50%가 넘는 자산을 사업에 사용해야만 한다. 주식교환열거방식은 대차대조표방식의 대용치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규모투자자는 앞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은 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제한적 활동에서 창출한 8만 캐나다달러 한도의 개인의 근로소득 ② 역외금융센터로부터의 소득 ③ 캐나다 회사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초과잉여에 대한 배당으로서 배당의 원천이 면세된 잉여금에서 배당된 배당소득 등이다. 외국발생자산소득, 역외투자펀드의 규정에 의한 과세 및 배당,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외국회사로부터의 간접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배제방법으로 캐나다의 거주자는 외국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을 캐나다의 과세액으로부터 세액공제할 수 있고, 캐나다 법인의 외국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독일, 호주와 비슷하게 면세와 공제가 결합된 방식(combined exemption/credit system)을 적용한다. 즉, 조세조약에서 면세를 규정한 경우 면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국 자회사로부터 개인이 수취한 배당은 면세와 공제가 결합된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³³⁾. 이런 배당은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은 국외원천소득 또는 해당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캐나다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험관련 사업 소득은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국가별로 계산된다. 외국 사업소득세는 3년간의 소급공제와 10년간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2004년 3월 22일 이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7년간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었다.

국외원천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선택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은 외국 지점소득에

33) 외국 자회사는 캐나다회사가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의 개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외국회사를 뜻한다.

적용하는 각 국가별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는 않지만 손금산입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5%로 제한된다. 공제한도 15%를 초과한 외국세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8.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대부분은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손금산입제도가 있지만, 손금산입제도는 세액공제에 비해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국가별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상당히 다양하다. 미국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한도의 설정방법도 국가별로 상이하며,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 및 손금산입 가능성 등도 다양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특정 연도에 납부하는 외국 법인세를 그 해의 외국소득에 기초하여 계산된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국외소득의 발생연도와 그에 대한 외국세액공제의 적용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부기준에 따른 외국 법인세와 발생기준에 의한 공제한도액 간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해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해 5년간의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손금산입도 가능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이고 영국은 무제한 이월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이월공제 기간이 3년이고 독일과 호주에서는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가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서도 이월공제

가 불가능한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사업소득에 대해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원천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독일과 호주도 조세조약 국가에서 과세된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면세하고 있어 이월공제의 필요성이 없다.

자국과 외국의 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국내 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세액공제에 한도액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한도와 일괄한도방식을 사용한다. 국가별 한도방식보다 일괄한도방식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한도방식을 선택한다. 일본과 호주도 일괄한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괄한도방식을 사용하면서 소득별 한도를 두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는 국가별·소득별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주요 국가들 중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프랑스는 원천지주의 과세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동안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던 일본과 영국은 2009년부터 원천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호주, 캐나다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배당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해외에서 운용되는 거액의 유보이익을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국내로 환수하여 국내에서 투자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현재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세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자문단(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2005)에 의하면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1개국에서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 IV-4〉 주요국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국가 | 이중과세배제 원칙 | 세액공제 규정 (국외소득계산) | 공제한도설정 | 공제한도초과액 | 세액공제 및 면세 | 간주납부 세액공제 |
|----|------------------------------|---|------------------|---|---|--------------|
| 한국 | 거주지과세 | 국내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주세특례제한법) | 일괄한도액/ 국가별 구분 | 5년 이월가능/ 손금산입 가능 | 간접외국세액공제: 지분율 20% 이상 배당 (조세조약 범위내 허용) | Yes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비거주자 포함) | | | | | |
| 미국 | 거주지과세 | 국내법 (IRC, IRS Notice 98-5: 경제적 실질검사 규정) | 일괄한도액/ 소득별 구분 | 10년 이월/1년 손금공제 가능 | 간접외국세액공제: 지분율 10% 이상 배당 | No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비거주자 포함) | | | | | |
| 일본 | 거주지과세 | 국내법 (조세특별조치법) | 일괄한도액 | 3년 이월/ 3년 손금공제 가능 /손금산입폐지 (2009) | 간접외국세액공제: 6개월 이상 25% 이상 주식보유 배당 - 2009년부터 해외회사 배 당 면세 | Yes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 | | | |
| 영국 | 거주지과세 | 국내법 (이중과세공제메뉴얼, 분류과세제도, 배당소득:부분조정 제도) | 국가별/ 소득별 구분 | 무제한이월/ 1년손금공제 가능 /손금산입 선택 가능 | 간접외국세액공제: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자회 사 또는 계열사의 배당 - 2009년부터 해외배당 면세 | Yes |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 | | | |

〈표 IV-4〉의 계속

| 국가 | 이중과세배제 원칙 | 세액공제 규정 (국외소득계산) | 공제한도설정 | 공제한도초과액 | 세액공제 및 면제 | 간주납부 세액공제 |
|-----|-----------------|---|----------------|---------------------------------------|---|--------------|
| 프랑스 | 이중과세배제 원천지과세 | 국내법 (CGI arts, 조세철차법, 배당소득: CFC 규정) | 국가별/ 소득별 구분 | 이월공제 불가능 /순금산입 가능 | - 직접소득 면제 - 수동적소득 과세, 손금산 입, 투자소득 등은 조세조 약제결시 세액공제 - 자본율 10% 이상 배당소득 면제 | Yes |
| 독일 | 거주지과세 | 국내법 (EStG) | 국가별/ 소득별 구분 | 이월공제, 소득공제 불가능 /순금산입 선택 가능 | - 조세조약국 사업소득 사업 관련 투자소득 면제 - 자본율 10% 이상 면제, 공 제 결함방식 - 10% 이하는 과세 및 세액 공제 | Yes |
| 호주 | 거주지과세 | 국내법 (배당소득: CFC, FIF 규정) | 일괄한도액 | 이월공제 불가능 /순금산입 불가능 | - 면세대상국 사업소득, 자산관련 이익 면제 - 자본율 10% 이상 배당면제, 공제 결함방식 - 자본율 10% 이하 간접외국 세액공제 | Yes |
| 캐나다 | 거주지과세 | 국내법 (CCHI003 Sec2) | 국가별/ 소득별 구분 | 10년 이월/ 3년 소금공제 가능(사업소득만 적용) | - 직·간접외국세액공제: 자본율 1% 이상 캐나다회사 또는 10% 이상 소유한 개인 - 배당소득 면제, 공제결함방식 | Yes |

IV.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87

<표 IV-5> OECD회원국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제도

| | 국 가 |
|------|---|
| 면 제 | 오스트레일리아 ¹⁾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¹⁾ ,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²⁾ , 독일, 그리스 ¹⁾ ,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²⁾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¹⁾ ,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 세액공제 | 체코,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 미국 |

주 : 1) 조세조약에 의해 면제

2) 95% 면제

자료: 연방세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자문단(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2005)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해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여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운용되는 자국 기업의 유보이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국내 투자 증가 및 자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또한 자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활동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독일 등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법인의 직접투자 소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도 조세조약국에 대해서는 외국소득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일본과 영국도 새롭게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면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현재의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본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현행 제도를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여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환시 어떤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전환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한다. 제2절 이후에서는 전환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부작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각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5절)에서는 논의결과를 요약하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법률상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가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89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자 입장에는 일괄공제가 유리한데 그 이유는 고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그 소득에 대한 국내 세액보다 많더라도 다른 저세율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관련 국내 세액보다 적다면 교차공제(cross-crediting)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율을 평준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국별 공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일괄공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과세이연이 있다. 거주자의 해외투자소득은 귀속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소득 발생 즉시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현지법인에 귀속된 후 그 법인소득이 배당 등의 형태로 국내 거주자에게 이전될 때 비로소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투자는 기업의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대부분 소득 발생 즉시 투자주체인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점을 통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투자주체인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차적으로 현지법인에 귀속되고, 그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권한이 없다. 그 소득이 국내 거주자에게 배당될 때 비로소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권한을 갖는다.

현지법인이 현지세금 납부 후 소득을 바로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 유보하는 경우 배당할 때까지 거주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에 대해 Hartman(1985)과 Sinn(1990) 등 소위 '새로운 견해(new view)'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지 유보소득이 언젠가는 거주자에게 배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종의 덫에 걸린 돈(trapped money)이라고 할 수 있어 거주지 과세가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에 유보된 소득이 상당히 많으며, 그 소득이

청산소득·이자 등 세부담이 낮거나 전혀 세부담을 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고, 유보된 소득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³⁴⁾. Dasai, Foley and Hines(2001)는 1982~1997년 미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국의 거주지 과세가 해외현지법인 배당률을 12.8%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제도가 소기의 목적인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가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론적 결론은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은 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이연 등 국외소득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세회피의 기회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직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주요 자본수출국들이 포함되어 있다³⁵⁾. 그리고 최근에는 거주지주의를 고집하며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 일본, 영국 중 일본과 영국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고수하더라도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제도, 법률체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도 완벽한 거주지주의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34) 안중석·최준욱(2003)

35) <표 IV-5> 참고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91

둘째, Grubert and Mutti(2001), Hufbauer and Assa(2007) 등이 미국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국내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사업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여러 국가에 사업장 또는 현지법인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거주지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 즉,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에 비해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불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이 현행 제도가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문제점은 자국의 이익과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목표 간의 충돌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셋째,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유지를 통한 세수입 확보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고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주지의 세수입 확보 가능성이다. 원천지주의는 국외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 비해 거주지주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자주 인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도 자체에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천지 세액이 거주지 세액보다 많은 경우 거주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환불)하지 않으므로 원천지 세액이 더 많으면 원천지주의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현지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경우에도 현지법인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여 재투자하거나 제3국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지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천지주의 과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현지소득을 발생 즉시 내국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투자 대상국이 조세피난처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수동적 성격의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적용대상에 제약이 있어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직접투자소득의 과세이연을 방지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제도 내에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과세이연과 교차공제는 세수입을 축소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행 제도는 거주지주의 과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인 자본수출의 중립성과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또 다른 장점인 거주지 세수입 확보의 관점에서조차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국내에 거주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주지주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현지법인 소득도 발생 즉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런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거주지주의를 포기하고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여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Hufbauer and Assa(2007)는 포트폴리오투자와 직접투자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방법을,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대체로 발생 즉시 거주자에게 귀속되며,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원천

지 세율은 국내 세법과 관계없이 조세조약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직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투자는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주지주의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면 자본의 해외유출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직접투자의 경우 현지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과세이연 문제를 해결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 현지법인이 원천지에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지 세금을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은 국내 세수입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해외직접투자소득의 국내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공조를 통해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도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런데 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국내과세를 면제하면 해외 저세율국에 대한 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의 증대가 국가경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실제로 해외투자가 거주지 조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외 저세율국에 대한 투자증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과세제도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부작용이 큰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국내소득을 해외 저세율국 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거주지주의를 통해 자본수출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 동기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원천지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 동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과세체제 전환 이후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얼마나 더 커지며, 얼마나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것인지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과세체제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체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과세체제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제에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체제 전환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투자자본의 이동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세체제의 전환이 국내투자를 희생해서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의 세수입은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수입의 확보가 거주지주의 과세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거주지주의 과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과세체제 전환이 세수입을 크게 감소시킨다면 이는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과세체제 전환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가격 조작의 동기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전가격 조작의 동기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 그것이 세정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 것인지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의 단순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의 과세체계하에서는 내국인의 국외 소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적절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러나 국외소득 면세제도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이익이 크지 않다면 세수입 단순화를 위해서 과세체계 전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2.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가. 거주지과세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현행 과세체계가 국내에 본부를 두고 해외에 투자한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해외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세부담이 원천지주의하에서의 세부담과 동일하므로 거주지 과세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세액보다 적어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거주지에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기업에 비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의 법인세율이 모두 25%로 동일한데, A국은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B국은 국외소득을 면세한다고 해보자. 또한 A국의 기업과 B국의 기업이 모두 C국에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국의 법인세율은 15%라고 하자. 그러면 A국 기업은 C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의 현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한 세후소득을 모기업에게 배당하면 추가로 1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B

국 기업은 C국에서 현지세율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C국 내의 현지법인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있어 A국에 본부를 둔 기업이 B국에 본부를 둔 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표 V-1〉과 〈표 V-2〉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집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경영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투자대상 국가별로 실효법인세 부담률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국가별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의 합계를 법인세 납부전 이익의 합계로 나눠 국가별 현지법인이 납부한 평균 실효세율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평균치는 표에 나타난 3년간의 세율을 단순평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7년 법인세율 25%를 기준으로 〈표 V-1〉에서는 3년간 평균 실효세율이 25% 이상인 국가들을 정리하였고, 〈표 V-2〉에서는 실효세율이 25% 미만인 국가들을 정리하였다.

개별 기업의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국가별로 합산된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전 이익 계산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적자기업의 손실이 납부할 세금이 있는 흑자기업의 이익을 상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효세율이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토 기간 내에 법인세 납부전 이익의 합이 음수가 된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현지법인의 법인세 납부전 이익의 합이 0보다 큰 경우의 실효세율만을 정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업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실효세율이 실제 세율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실효세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국가들은 적자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에서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법인의 실효세율을 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2.2%와 9.6%로 비교적 낮은 데 비해 2007년에 세율이 74.9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에 적자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97

〈표 V-1〉 각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25% 이상)

(단위: %)

| 국 가 | 2007 | 2006 | 2005 | 평균 |
|-------------|-------|-------|-------|-------|
| 일 본 | | | | 72.21 |
| 캐 나 다 | 75.64 | | 59.91 | 67.78 |
| 포 르 투 갈 | 68.91 | 77.72 | 27.43 | 58.02 |
| 인 도 네 시 아 | 53.79 | 47.59 | 54.11 | 51.83 |
| 아 르 헨 티 나 | 50.03 | | | 50.03 |
| 형 가 리 | | 6.81 | 77.88 | 42.35 |
| 프 랑 스 | 40.44 | 38.73 | 41.78 | 40.31 |
| 이 탈 리 아 | 61.63 | 15.22 | 43.91 | 40.25 |
| 슬 로 바 키 아 | 60.61 | | 19.55 | 40.08 |
| 러 시 아 | 43.29 | 33.27 | | 38.28 |
| 독 일 | 37.21 | | | 37.21 |
| 페 루 | 31.01 | 42.97 | 35.35 | 36.44 |
| 브 라 질 | 43.20 | 41.95 | 24.12 | 36.43 |
| 영 국 | 32.13 | 43.63 | 31.54 | 35.77 |
| 미 국 | | 34.27 | | 34.27 |
| 인 도 | 27.32 | 33.74 | 40.08 | 33.71 |
| 말 레 이 시 아 | 74.96 | 9.62 | 12.20 | 32.26 |
| 스 웨 덴 | 39.20 | 26.00 | 27.53 | 30.91 |
| 벨 기 에 | 13.51 | 35.10 | 44.03 | 30.88 |
| 스 페 인 | 43.93 | 34.26 | 13.94 | 30.71 |
| 파 푸 아 뉴 기 니 | 26.87 | 31.42 | 31.88 | 30.06 |
| 베 트 남 | 12.64 | 42.71 | 32.37 | 29.24 |
| 미 얀 마 | 13.55 | 44.44 | | 29.00 |
| 노 르 웨 이 | | 27.99 | | 27.99 |
| 네 덜 란 드 | 26.38 | | 27.11 | 26.75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

〈표 V-2〉 각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25% 미만)

(단위: %)

| 국 가 | 2007 | 2006 | 2005 | 평균 |
|----------|-------|-------|-------|-------|
| 오스트레일리아 | 32.21 | 18.67 | 18.38 | 23.09 |
| 몽 골 | 0.00 | 34.80 | 26.21 | 20.34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20.12 | 20.12 |
| 대 만 | 16.59 | 18.33 | 24.95 | 19.96 |
| 터 키 | | | 17.80 | 17.80 |
| 칠 레 | | | 17.70 | 17.70 |
| 중 국 | 12.08 | 12.80 | 16.04 | 13.64 |
| 태 국 | 9.09 | 13.75 | 10.27 | 11.04 |
| 스 리 랑 카 | 6.26 | 6.13 | 18.53 | 10.31 |
| 싱 가 포 르 | 3.86 | 13.61 | 6.53 | 8.00 |
| 룩셈부르크 | 5.13 | | 5.31 | 5.22 |
| 필 리 핀 | 5.92 | 4.20 | | 5.06 |
| 홍 콩 | 3.90 | 4.42 | | 4.16 |
| 파 키 스 탄 | 3.18 | | | 3.18 |
| 오 스트 리 아 | 0.99 | 1.01 | 5.06 | 2.36 |
| 방글라데시 | 1.00 | 2.14 | 2.23 | 1.79 |
| 파 나 마 | 0.41 | | | 0.41 |
| 과 테 말 라 | 0.00 | | | 0.00 |
| 콰 | | 0.00 | | 0.00 |
| 솔로몬군도 | 0.00 | | | 0.00 |
| 아랍에미리트 | 0.00 | | 0.00 | 0.00 |
| 영국령버진군도 | 0.00 | | 0.00 | 0.00 |
| 온두라스 | 0.00 | | 0.00 | 0.00 |
| 우즈베키스탄 | | 0.00 | | 0.00 |
| 이스라엘 | | | 0.00 | 0.00 |
| 케이만군도 | | 0.00 | 0.00 | 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99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전 소득의 25% 이상을 현지에서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현지법인 소득을 다른 저세율국에 원천을 둔 소득과 통합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교차공제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대만, 중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실제로 납부한 세 부담이 법인세전 이익의 20% 미만으로 이들 지역의 현지법인 소득을 모기업에 배당하면 우리나라 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효세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괌, 과테말라, 버진 군도, 케이만 군도 등 소위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실효세율이 0%이거나 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과 〈표 V-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주로 북미지역과 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일본 등으로 구성된 고세율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나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기업들이 원천지에 납부하는 세금의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으므로, 이들 지역의 투자소득을 국내로 환수하려면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이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와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각각 중국에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독일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에 있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0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표 V-2〉에서 우리나라 기업

들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 국가들의 실효세율은 대체로 20%를 하회하므로 아직도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과세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로 모회사를 이전하려는 동기를 갖게 한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다국적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체들도 국내에 본사를 두지 않고 아예 회사 전체를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한다면 적어도 세금의 관점에서는 사업본부를 이전하려는 동기는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국적기업의 본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연구한 문헌들은 대부분 투자자본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직접 사업활동에 이용되는 자본의 투자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자본수출 중립성을 강조하는 조세정책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Dasai and Hines(2004)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을 통제하는 집단이 달라지면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본의 소유에 대한 중립성(CON)이 보다 중요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즉,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더라도 그 자본을 통제하는 집단이 보유한 경영능력과 전략, 엔지니어링, 물류기법,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 무형재산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UNCTAD(2005)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약 7만개의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이 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수는 69만개에 달하며, 이들 다국적기업이 세계 총교역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 중 3분의 1은 계열기업 간의 거래이다. 다국적기업은 세계경제에서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Hufbauer and Assa(2007)는 다국적기업 본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정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 노하우, 정부의 허가 등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재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자산은 해외시장을 뚫고 들어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현지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기에는 곤란한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은 이들 자산을 해외 현지기업에 판매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기보다는 직접 활용하여 해외기업을 운영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의 관심이 자본의 배분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 및 구성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Haufbauer and Assa(2007)가 지적한 다국적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에 많은 사업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막대한 간접자본 투자(overhead investment)를 요구하며, 이러한 투자들은 대체로 고정비용이 된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연구개발 및 실험(RD&E), 최고 수준의 플랜트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링 기법, 대중들에게 상표를 각인시키는 일, 효과적인 물류체계의 개발 등이 이러한 투자를 요구하는 분야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비는 대체로 고정비용이다. 이러한 간접자본은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과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개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의 특정 활동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자본의 형성은 대체로 다국적기업의 본부에서 수행하며, 많은 경우에 여러 국가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지역 또는 아주 소수의 지역에 집중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및 실험, 자동 창고시스템, 기업의 재무관리 등이 그러한 활동에 해당된다. 2004년 미국 기업의 매출에서 해외자회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인 데 비해 연구개발에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한데, 이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단 본부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다국적기업은 기술과 마케팅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특징은 국제조세정책에 있어 다국적기업 본부의 국내 유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해외 다국적기업의 본부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본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 거주지과세와 해외직접투자소득의 환수

일본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일본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요한 이유로 해외에 유보된 이익의 국내 환수를 촉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거주지국 과세가 환수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국외 소득을 현지에 유보하여 나중에 청산소득 등 세부담이 낮은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절감·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해외자회사 이익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해외 그룹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약 1.6배 증가에 그쳐 해외자회사에서 매년 고액의 이익을 내부유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6년 잔고 기준으로 이들 해외자회사 등의 내부 유보액이 약 17조엔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손자회사 이하의 그룹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5년에 그동안 유보된 해외소득을 당해연도에 환수하면 그 중 일부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휴일제도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에 환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5.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 해에 환수된 해외소득이 2,170억달러로 전년도 350억달러의 6배를 능가하였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거주

지과세를 폐지하고 해외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해외에 유보된 소득의 환수가 촉진될 것이라는 것이 JCT(2008), Haufbauer and Assa(2007), Grubert and Mutti(2001) 등 면세로의 전환을 옹호하는 연구들의 주장이다.

해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하는 경우 국내 세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투자수요가 있으면 해외소득을 환수하고 동시에 모기업에서 신규 자금을 투입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것보다 현지소득을 유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해외의 현지 세후수익률과 국내투자의 세후수익률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균형이 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균형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해외소득의 과도한 유보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상업적 목적상 유보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 자체가 비용을 유발한다. 과도한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담에 미치는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rubert and Mutti(2001)는 조세에 대한 자금 환수의 탄력성을 추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금을 적정선 이상으로 해외에 유보하는 데 따른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크기는 유보된 이익의 1.7% 수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Hufbauer and Assa(2007)는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2005년의 미국의 조세휴일 실험 결과에 근거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환수에 대한 세율을 5.25%로 낮춰 적용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6배가 넘는 해외유보소득이 그 해에 환수되었다. 이는 해외유보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 비용은 과도한 해외유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이다.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가 투자자본의 이동을 막아서는 안된다.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소

득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한다면 투자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세전수익률이 10%이고 국내에서는 11%인 경우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여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환수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해외 세금납부 후 소득이 10,000이 있는 경우 현지 세율이 0%이고 세후소득 환수시 국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15%라고 하자. 이때 그 소득을 해외에 유보하여 투자한다면 1,0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국내로 환수하여 15%의 환수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8,500이 되며, 이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11%인 935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자금의 국내 환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도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3〉은 원천지 세율수준별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법인세후 수익에서 우리나라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국가별, 연도별로 자세한 내역은 부록의 〈부표 1〉에 정리하였고, 여기서는 요약된 내용만 제시하였다.

〈표 V-3〉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성지표¹⁾

(단위: %)

| 세율구간 | 2005~07 평균 | |
|--------|------------|------------|
| | 단순평균 | 100% 이상 제외 |
| 25% 이상 | 32.77 | 23.88 |
| 10~25% | 35.21 | 16.51 |
| 10% 미만 | 11.43 | 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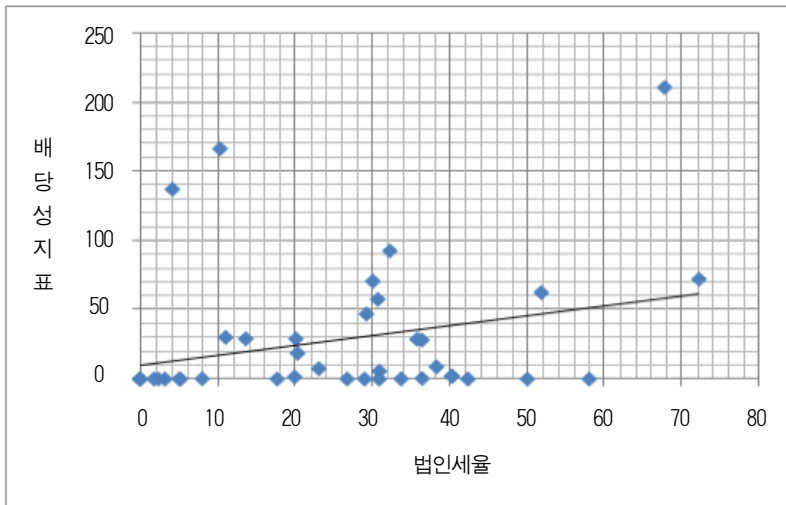
주: 1) 배당성지표: 한국주주에게 배당한 금액/법인세후 수익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105

각 집단별로 배당성지표가 100% 또는 200% 이상이어서 평균치에 큰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한두 개씩 발견되는데, 이러한 극단치의 영향을 배제하고 평균치를 구한 것을 보면 세율이 25% 이상인 국가들의 평균치는 23.88%인 데 비해 세율이 10~25%인 국가의 평균치는 16.51%이고 세율이 10% 미만인 국가의 현지법인은 거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과 배당성지표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V-1]에서는 3년간 평균세율과 배당성지표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하였고, <표 V-4>에서는 배당성지표 평균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가별 법인세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V-1] 법인세율과 배당성지표의 관계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해외투자를 한 기업들이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한 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정리한 것인데 개별 기업별 자료는 입수하지 못하였고 투

자대상 국가별로 합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그림 V-1]에서는 배당성지표와 법인세율이 약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현지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여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소득의 환수를 회피할 유인이 적은 반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현지소득을 국내로 환수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4>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회귀분석에서 국가별 법인세율과 배당성지표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 추정계수의 통계적 신뢰도는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간의 상관계수는 0.540167, 결정계수(R^2)는 0.29178이다.

<표 V-4> 실효법인세율과 배당성지표의 상관관계

| | 계수 | 표준 오차 | t통계량 |
|------|----------|----------|----------|
| 법인세율 | 0.951655 | 0.234426 | 4.059511 |

Dasai, Foley and Hines(2001)는 회귀분석을 통해 원천지 세율이 해외소득의 환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단순한 하버거 삼각형(Harberger triangle)의 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세부담 회피를 위한 과도한 유보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의 손실(dead weight loss)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해외유보가 어느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오는지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정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천지 세율이 배당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β , 원천지 i 국의 세율은 t_i , 우리나라 세율을 t_k 라고 하면 i 국의 세율과 우리나라의 세율 격차가 i 국의 현지법인 소득의 국내

환수에 미치는 영향을 $\beta y_i(t_i - t_k)$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y_i 는 현지법인의 세후소득을 의미하며, i 국 현지법인의 후생손실 크기는 이 배당액의 변화에 세율 격차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text{즉, } D = \frac{1}{2} \sum_{i=1}^n \beta y_i (t_i - t_k)^2$$

이 식에 <표 V-4>에 나타난 β 의 추정치 0.951655와 <표 V-1> 및 <표 V-2>에 나타난 국가별 평균세율, 한국의 세율 0.25, 그리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입수한 각국별 법인세 납부 후 수익을 대입하여 D 를 구하면 D 는 법인세 납부 후 수익 총액의 0.8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sai, Foley and Hines(2001)가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1.55%였다.

3. 과세제도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가. 거주지과세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소득의 과도한 유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폐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수출 중립성이 무너지고 국내 투자에 비해 해외투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에서의 공제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거주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국내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즉, 저세율국에 투자한 경우 원천지주의로 전환하여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면 국내투자에 비해 저세율국 투자가 유리하게 된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

는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투자를 전환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본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거주지 과세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현행 제도하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를 해외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한다.

1) 이론적 논의

해외투자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폐지하면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의 저세율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Hartman(1985)은 거주지 세액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견해(new view)'를 주장하였다. 이후 Sinn(1990)에 의해서 발전된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 수익에 대한 유효세율이 현지에 유보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보다 높을 경우 해외투자자는 가능한 한 현지 유보소득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해외에 기업을 설립할 당시나 설립한 이후 초기단계(infant subsidiary)에는 유보소득이 충분하지 못하여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만 기업이 성숙하여(mature subsidiary) 현지에서 형성된 소득의 유보만 가지고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이전을 받지 않고 유보소득만 가지고 모든 투자를 수행한다. 투자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해외직접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해외소득을 본국으로 환수한다. 이에 대한 Hartman(1985)의 논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자회사에서 1단위의 세후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치자. t_f 를 원천지국에 납부하는 세금의 유효세율이라고 하면 1단위의 해외수익을 현

지에 재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현지 세후 원리금은, $(1+r_f(1-t_f))$ 가 되며, 현지 납부세액은 $r_f t_f$ 가 된다. 이 원리금을 본국으로 환수할 경우 세후 수익은 $\left(\frac{1-\theta_f}{1-t_f}\right) \times (1+r_f(1-t_f))$ 이다. 여기서 θ_f 는 본국으로 환수된 소득에 대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세율로서 원천지와 거주지 조세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θ_f 는 원천지 세율 t_f 와 거주지 세율 t_r 로 구성되며, 거주지 조세제도에 따라 t_f 보다 클 수도 있고 t_f 와 같을 수도 있다. 거주지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총계는 $\left(\frac{\theta_f-t_f}{1-t_f}\right) \times (1+r_f(1-t_f))$ 가 된다.

만약 자회사가 해외에서 발생한 한 단위의 이익을 거주지국으로 환수하고, 동시에 그만큼의 자금을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투자하며, 그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모두 거주지국으로 환수한다면 이 다국적기업은 첫 번째 단계에서 환수된 1단위의 해외소득에 대해 $\frac{\theta_f-t_f}{1-t_f}$ 의 세금을 거주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수된 해외소득의 세후 가치는 $\frac{1-\theta_f}{1-t_f}$ 가 된다. 모기업이 이 자금을 자회사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투자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후 소득 및 원리금은 $\left(\frac{1-\theta_f}{1-t_f}\right) \times (1+r_f(1-\theta_f))$ 가 된다. 이를 앞서 검토한 유보소득으로 투자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θ_f 가 t_f 보다 큰 경우 즉, 거주지국으로 환수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이 현지에 유보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보다 높은 경우 다국적기업은 현지소득을 거주지국으로 환수하고 동시에 거주지국에서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것보다 해외소득을 현지에 유보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총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법인은 현지 투자수요를 가능한 한 유보소득으로 충당하고자 할 것이다. 현지소득이 현지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은 경우에만 본국에서 자회사로 자금을 이전하여 투자한다. 그러므로 현지 자회사의 한계투자는 현지 유보소득에 의해 충당된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국에서 1단위의 가치가 있는 현지 유보소득의 거주지국 세전 현지가치는 $\frac{1-t_f}{1-\theta_f}$ 가 된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전 수익은 $\left(\frac{1-t_f}{1-\theta_f}\right) \times r_f$ 가 되며, 원천지국 세후 수익은 $\left(\frac{1-t_f}{1-\theta_f}\right) \times r_f(1-t_f)$ 이 된다. 이 이익이 본국으로 환수되면 거주지국에 $\left(\frac{1-t_f}{1-\theta_f}\right) \times r_f(1-t_f) \times \left(\frac{\theta_f-t_f}{1-t_f}\right)$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거주지국 세후가치는 $\left(\frac{1-t_f}{1-\theta_f}\right) \times r_f(1-t_f) \times \left(1 - \frac{\theta_f-t_f}{1-t_f}\right) = r_f(1-t_f)$ 가 된다. 따라서 국내 투자수익률을 r , 그에 대한 국내세율을 t 라고 할 때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균형조건은 $r_f(1-t_f) = r(1-t)$ 가 되고, 유보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은 t_f 가 된다. 이 균형조건의 우변은 국내투자에 대한 세후수익률로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요약해 보면, 회수된 해외소득에 대한 유효세율(θ_f)이 유보소득에 대한 유효세율(t_f)보다 높을 경우 다국적기업은 해외자회사의 한계투자를 현지 유보소득으로 충당하며, 이 한계투자에 대한 균형조건은 θ_f 와 t_f 가 같은 경우의 균형조건인 $r_f(1-t_f) = r(1-t)$ 와 같다. 이는 거주지국이 환수된 해외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던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원천지국의 국내투자에 대한 유효세율과 거주지국의 국내투자에 대한 세율에 의해서 결정되며, 해외투자에만 적용되는 거주지국의 조세정책은 해외직접투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균형조건이 $r_f(1-\theta_f) = r(1-t)$ 로서 θ_f 가 t 와 같은 경우 즉, 국외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자본수출 중립성이 성립되어 거주지와 원천지의 세금이 모두 투자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가 모든 해외소득이 발생 즉시 거주지국으로 환수되고 해외투자 재원은 모두 모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이전으로 조달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데 비해 Hartman과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

은 현지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거주지국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Hartman의 가정하에서는 해외투자소득을 현지에 유보함으로써 세부담이 완화된다면 투자자들은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세부담이 적은 현지 유보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외투자의 한계적 재원조달은 현지 유보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rubert and Mutti(2001)에 의하면 유효세율이 10% 이하인 지역에 투자한 미국기업의 소득 환수율은 7%에 불과하며, 이들 지역에 CFC가 설립된 이후 처음 15년간은 배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Hartman의 새로운 견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Jun(1989a, 1989b) 등은 다국적기업의 실제 행태를 보면 현지유보를 통해 해외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세부담 절감의 차원에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면서 동시에 투자자금을 모기업으로부터 이전하여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Jun은 이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현지법인의 지분소유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설명하였는데, 이 경우 해외소득의 환수에 대한 거주지국 세부담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해외소득의 일정부분(p)을 본국으로 환수하고, 나머지 $(1-p)$ 는 현지에서 재투자하며 추후에도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유효세율 θ_f 는 현지소득에 대한 유효세율 t_f 와 환수된 소득에 대한 거주지 세율 t_r 의 선형결합 형태인 $((1-p)t_f + pt_r)$ 이 될 것이다.

2)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실증분석에서 Grubert and Mutti(2000), Altshuler and Grubert(1998) 등은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변수로 원천지 세율(t_f)을 사용

하여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해외투자 대상국의 유효세율이 투자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Grubert(2001)에서는 환수에 대한 세부담을 모형에 포함시켜 현지세율은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환수된 소득에 대한 거주지 세부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Grubert(2001)의 의도는 국별 투자 모형에 환수된 소득에 대한 거주지 세율(t_r)을 직접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공제한도 초과기업이 해외소득 환수시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 세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 변수는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한도 초과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해외투자가 적으며, 현지 세부담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추정결과는 기대와 달리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수이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Grubert(2001)는 거주지 환수에 대한 세금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Grubert and Mutti(2000) 등 조세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횡단면 분석을 한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log K_i = a + b \log(1 - t_i) + c \log X_i \quad (1)$$

여기서 K_i 는 i 국으로의 직접투자 규모를 나타내며 t_i 는 i 국의 유효세율, X_i 는 i 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을 의미한다. Hartman(1985)의 주장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해외투자 수익률과 그에 대한 현지의 유효세율, 그리고 해외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투자 수익률과 그에 대한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원천지 국가별 유효세율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국내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횡단면 분석에서 국내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

X_i 는 조세 외에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Grubert and Mutti(2000)는 국가별 GDP와 1인당 GDP, 그리고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였다. GDP는 시장의 규모를 대변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하며, 1인당 GDP는 생활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역시 시장의 규모를 설명하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에 고급노동인력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의 숙련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른 논문에서는 임금지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독립된 변수로서, 그리고 세율과의 교차항으로서 포함시켰는데, 무역과 국제투자에 대한 규제가 심한 국가에 대한 투자조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북미지역과 남미지역, EC, 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하는 가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다른 변수들로 포착할 수 없는 지역별 특성을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 특정 국가를 선정하기 전에 북미지역, 유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국가를 선정한다면 이러한 가변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 실증분석 결과

〈표 V-5〉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자료를 활용하여 위의 회귀분석모형(1)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K_i 는 우리나라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누계(2007년 말 기준)로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별 유효세율은 앞서 〈표 V-1〉과 〈표 V-2〉에 나타난 2005~2007년 평균세율을 적용하였다. X_i 에 포함되는 투자대상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GDP와 1인당 GDP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로 구분하여 각 지역을 나타내는 가변수를 포함하였다. GDP와 1인당 GDP는 IMF 자료를 사용하였다. Grubert and Mutti(2000)

가 사용한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것인데, 1990년대의 자료로 2007년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세계은행은 그 후 이 지표를 갱신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표 V-5〉의 (1)열은 조세를 포함하지 않고 국가별 GDP 및 1인당 GDP와 지역더미변수가 우리나라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추정해본 것이다. 추정결과 GDP가 큰 국가에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집중되며, GDP가 같은 경우 1인당 GDP가 작은 곳에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는 저가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역별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북미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미지역과 동남아시아 가변수의 추정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열과 (3)열, (4)열에서는 (1)열에 나타난 기본모형에 원천지 실효세율(t_f)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원천지 세율은 $\ln(1-t_f)$, $1/(t_f+0.1)$, t_f 의 세 가지 형태로 넣었는데, 어떤 형태든 원천지 실효세율(t_f)과 해외직접투자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에 예측한 바와 같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통계적 신뢰도는 매우 낮으며, 모형의 설명력에 기여하는 바도 거의 없다. (5)열에서는 지역더미와 세율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지역더미를 제외하고 세율변수만 넣어서 추정해 보았는데, 세율변수 추정계수의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수정 R^2 는 0.55 수준에서 0.43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6)열에서는 지역더미 대신 원천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고세율국(25% 이상)과 저세율국으로 구분하여 고세율국 더미변수를 넣었으며, 고세율국에 대한 투자가 원천지 세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고세율국 더미변수와 원천지 유효세율의

교차항을 포함시켰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하에서 저세율국 투자는 최종 세부담이 거주지 과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고세율국 투자는 최종 세부담이 원천지 세부담과 같다. 그러므로 고세율국 투자가 저세율국 투자에 비해 원천지 세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추정 결과는 고세율국 더미변수, 원천지 세율변수, 그리고 이 두 변수의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모형의 설명력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지를 결정함에 있어 원천지 세율보다 시장의 규모, 임금수준, 기타 지역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V-6〉은 앞의 〈표 V-5〉에서 추정한 것과 유사한 모형을 통해 해외소득을 거주지로 환수할 때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의 소득을 국내로 환수하려면 현지법인의 세후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원천지에서 배당액의 국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게 된다.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약에 정해진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원천지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표 V-6〉에서는 이 세율을 t_w 라고 표현하였으며, 우리나라와 해당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각국별 제한세율 자료를 구하였다. 해외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두 가지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원천세율은 자국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였다³⁶⁾.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이후 실제로 거주지국에서는 환수된 소득에 대해 거주지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지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하게 된다. 〈표 V-6〉의 추정에서 국내세율은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였으며, 국내 세액에서 외국납부세

36) 이 세율은 *International Tax Review* 또는 해당 국가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액을 공제한 차액을 t_r 로 표현하였다.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t_r = 0$ 이 된다. <표 V-6>에서는 t_r 과 t_w 에 대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넣은 경우만을 정리하였는데, 대수를 취한 경우나 역수 ($1/t$)의 형태로 넣은 경우도 추정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5> 원천지 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 설명변수 | (1) | (2) | (3) | (4) | (5) | (6) |
|---------------------------|-------------------------|-------------------------|-------------------------|-------------------------|-------------------------|-------------------------|
| 상수 (t 값) | | 0.440988 (0.19193) | 0.207997 (0.07818) | 0.521179 (0.22629) | 0.208096 (0.08695) | 0.172810 (0.07075) |
| ln(GDP) | 0.649323 (4.59065) | 0.703685 (4.69852) | 0.693990 (4.31778) | 0.707835 (4.58876) | 0.918049 (5.64172) | 0.929137 (5.48948) |
| ln(1인당 GDP) | -0.361775 (-1.73103) | -0.385228 (-1.83754) | -0.393170 (-1.81128) | -0.399371 (-1.87599) | -0.642657 (-3.41835) | -0.646926 (-3.33487) |
| 북미지역 더미 | 2.781940 (2.20114) | 3.170611 (2.41851) | 2.888764 (2.24530) | 3.090510 (2.36685) | - | - |
| 유럽지역 더미 | 1.379086 (1.85535) | 1.520944 (2.01962) | 1.500686 (1.93352) | 1.541277 (2.01949) | - | - |
| 동남아시아지역 더미 | 2.497141 (3.35916) | 2.545487 (3.42572) | 2.526446 (3.36364) | 2.515385 (3.37888) | - | - |
| 남미지역 더미 | 0.728119 (0.91180) | 0.792457 (0.99186) | 0.731190 (0.90812) | 0.778090 (0.97124) | - | - |
| 고세율국 더미 | - | - | - | - | - | -0.164427 (-0.17011) |
| (고세율국 더미)ln(1- t_f) | - | - | - | - | - | -2.399971 (-0.57573) |
| ln(1- t_f) | - | 0.926340 (1.08433) | - | - | - | 2.923800 (0.73121) |
| 1/($t_f+0.1$) | - | - | 0.053357 (0.60257) | - | - | - |
| t_f | - | - | - | -1.296496 (-0.95629) | -0.881474 (-0.60555) | - |
| 표본수 | 46 | 46 | 46 | 46 | 46 | 46 |
| Adj R^2 | 0.554705 | 0.556703 | 0.547312 | 0.553727 | 0.430617 | 0.407214 |

주: t_f 는 원천지 법인세율

〈표 V-6〉 해외소득 환수에 대한 세금이 해외직접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 설명변수 | (7) | (8) | (9) | (10) | (11) | (12) |
|---------------------------|------------|------------|------------|------------|------------|------------|
| 상수 | 0.091066 | -0.247555 | -0.332200 | 0.327211 | -0.180842 | -0.117246 |
| (t값) | (0.03591) | (-0.09139) | (-0.11643) | (0.14225) | (-0.07491) | (-0.04802) |
| ln(GDP) | 0.702717 | 0.920768 | 0.910441 | 0.711785 | 0.926164 | 0.910875 |
| | (4.49552) | (5.67418) | (5.43188) | (4.74688) | (5.99454) | (5.70127) |
| ln(1인당 GDP) | -0.407241 | -0.649316 | -0.636022 | -0.434537 | -0.657808 | -0.655434 |
| | (-1.87571) | (-3.43846) | (-3.21960) | (-2.00747) | (-3.49787) | (-3.45037) |
| 북미지역 더미 | 2.942582 | - | - | 2.911658 | - | - |
| | (2.29112) | - | - | (2.30833) | - | - |
| 유럽지역 더미 | 1.545159 | - | - | 1.537006 | - | - |
| | (1.99746) | - | - | (2.04741) | - | - |
| 동남아시아지역 더미 | 2.502239 | - | - | 2.429417 | - | - |
| | (3.35161) | - | - | (3.27707) | - | - |
| 남미지역 더미 | 0.762535 | - | - | 0.581328 | - | - |
| | (0.94955) | - | - | (0.72359) | - | - |
| 고세율국 더미 | - | - | -0.012573 | - | - | 0.291513 |
| | - | - | (-0.01027) | - | - | (0.44333) |
| (고세율국 더미)×($t_r + t_w$) | - | - | 3.644803 | - | - | - |
| | - | - | (0.28391) | - | - | - |
| ($t_r + t_w$) | 2.547806 | 2.150318 | 2.724392 | - | - | - |
| | (0.81836) | (0.64884) | (0.51402) | - | - | - |
| t_r | - | - | - | 3.642244 | 3.012690 | 4.121066 |
| | - | - | - | (1.20147) | (0.93787) | (1.00632) |
| 표본수 | 46 | 46 | 46 | 46 | 46 | 46 |
| Adj R ² | 0.550902 | 0.431346 | 0.405870 | 0.559712 | 0.437428 | 0.426456 |

주: t_w 는 해외소득 국내환수시 원천지에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 t_r 는 해외소득 국내환수시 거주지에서 징수하는 세율의 세율

t_r 과 t_w 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앞서 원천지 세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수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의 추정계수는 예외없이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으며, 이 변수들이 모형의 설명력을 더하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각 세율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소득 환수에 대한 세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천지세율과 환수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이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환수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이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그보다는 원천지 세율의 크기 자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얼마나 견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에서 세율이 40%를 초과하는 국가와 5% 미만인 국가를 제외하고 <표 V-5> 및 <표 V-6>과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는데 추정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 한계유효세율 분석

Altshuler and Grubert(2001)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국외원천소득 면세방식으로 전환할 때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환 이전과 전환 이후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한계유효세율은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한계유효세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본다.

가) 한계유효세율의 개념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각 대안들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수익의 현재가치가 동일해지도록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균형 상태에서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익률과 그 추가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데, 그 값을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라고 한다. King and Fullerton(1984)의 방식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C)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frac{(1-A)}{(1-\tau)(1+\pi)} [\rho - \pi + \delta(1+\pi)] - \delta \quad (2)$$

A =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τ = 법인세율, ρ = 할인율, π = 물가상승률, δ = 경제적 감가상각률, i = 명목금리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물가상승은 없고($\pi = 0$), 신규자본투자에 대한 할인율(ρ)은 실질세후이자율(r)과 같다고 가정하자. 투자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비용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요구되는 할인율이 낮아져 $r(1-\tau)$ 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자금 중 차입자금으로 투자하는 비중을 b 라고 하면 신규자본투자에 대한 할인율은 $\rho = (1-b)r + br(1-\tau)$ 가 되며, 우변을 다시 정리하면 $\rho = r - br\tau$ 가 된다. 또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문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A)는 0이 된다.

이러한 가정들을 대입하면 자본비용 C 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C = \frac{r}{(1-\tau)}(1 - b\tau) \quad (3)$$

이렇게 계산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투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세전수익률을 의미하여 여기서 투자자가 실제로 요구하는 실질세후수익률(r)을 차감한 나머지가 한계세부담이 된다. 이 한계세부담을 세전수익률 즉, 사용자비용으로 나누면 한계유효세율이 된다.

$$ETR = \frac{C-r}{C} \quad (4)$$

앞의 식 (2)와 (3)은 국내 투자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만 납부하는 경우의 사용자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것이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설립된 원천지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며, 세후소득이 국내로 환수되면 국내에서 다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지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국내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하는 세금(t_r)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_r = p \frac{(t_k - t_g)}{(1 - t_g)} \quad (5)$$

여기서 p 는 세후소득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t_k 는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을 나타낸다. t_g 는 국내 세법상 인정되는 원천지 세율로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이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을 합산(gross-up)하여 국내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므로 t_g 를 그로스업 비율이라고 한다. 한 국가에만 투자하고 그 국가에 투자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은 경우 t_g 는 현지 유효세율(t_f)과 같다.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총세부담을 θ_f 라고 하면 θ_f 는 t_r 과 t_f 의 합계 즉, $(t_r + t_f)$ 와 같다. 해외납부세액이 공제 한도보다 많은 경우 또는 원천지주의제도를 적용하여 거주지에서 해

외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 t_r 은 0이 되어 θ_f 는 t_f 와 같게 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의 배분 문제이다. 현지투자 금액 중 일부분(b)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 거주지의 세 부담이 원천지 세 부담보다 많아서 투자소득을 거주지로 환수할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즉,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모기업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모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법인세액은 증가하겠지만 해당 이자소득에 거주지 법인세율을 적용한 만큼 거주지에서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t_k - \theta_f)$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수익률이 r 이고 차입금 비율이 b , 차입금 이자 중 모기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a_b 라고 한다면 이자비용의 일부를 모기업에서 공제함으로써 인해 얻은 세 부담 절감액은 $rb a_b(t_k - \theta_f)$ 가 된다. 이자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 배분도 유사한 영향을 주는데, 다음에서는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비용을 제외한 다른 간접비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현행 제도하에서 공제한도 미달 기업의 사용자비용

이상의 가정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즉, 균형세전수익률(C_T)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_T = \frac{r(1 - b\theta_f - a_b b(t_k - \theta_f))}{1 - \theta_f} \quad (6)$$

θ_f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총세부담(= 현지세금(t_f) + 환수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t_r))

t_k : 한국의 명목법인세율

b : 부채비율

a_b : 이자비용 중 모기업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분의 비중

분모의 마지막 항, $a_b b(t_k - \theta_f)$ 은 현지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의 일정부분을 본부에서 거주지국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세부담 절감효과를 나타낸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무형자산(intangible asset)투자에 대한 사용자비용(C_I)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C_I = \frac{r}{1 - t_k} \quad (7)$$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사용료소득은 현지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어 세부담이 없으며, 그 소득이 본국으로 환수될 때 본국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뿐이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거주지 세금뿐이므로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조세 측면에서의 이익은 없다.

현지법인에 대한 총투자액 중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k 이고 무형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1 - k)$ 라고 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자비용을 가중평균하면 현지법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k C_t + (1 - k) C_I = k \left[\frac{r(1 - b\theta_f - a_b b(t_k - \theta_f))}{1 - \theta_f} \right] + (1 - k) \left[\frac{r}{1 - t_k} \right] \quad (8)$$

k : 유형자산의 비중

다) 현행 제도하에서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사용자비용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의 유효세율이 거주지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거주지국으로 이전하여 공제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a_b = 0$ 이 된다. 또한 현지소득을 거주지로 환수할 때 거주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이 없으므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유효세율 θ_f 는 t_f 와 같다. 그러므로 이 경우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_T = \frac{r(1 - bt_f)}{1 - t_f} \quad (9)$$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거주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업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공제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한도를 설정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중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액과 동등한 금액만큼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증가하여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사용자비용(C_f)는 r 이 된다.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자비용과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자비용을 가중평균하면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사용자비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k \left(\frac{r(1 - bt_f)}{1 - t_f} \right) + (1 - k)r \quad (10)$$

라)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시 사용자비용

원천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 투자자는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거주지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C_T)은 앞서 검토한 공제 한도 초과기업의 경우와 같다. 즉,

$$C_T = \frac{r(1 - bt_f)}{1 - t_f} \quad (11)$$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자비용의 배분(allocation)이다. 앞서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경우에서 현지법인의 투자자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 그 이자비용 중 일부를 모기업에서 비용으로 공제한다고 가정하였다. 국외원천소득 면세의 경우에도 해당 국외원천소득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이자비용 등의 간접비용을 모기업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잠식할 수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하에서는 면세되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고 모기업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비용배분 규정(cost allocation rule)을 확립해야 한다. 위의 식 (11)은 이런 규정이 확립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사용자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자비용이 공제한도 초과기업보다는 공제한도 미달기업과 같게 된다.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공제받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하에서는 유형자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면제하므로 무형자산 소득 즉, 사용료소득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거주지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C_I = \frac{r}{1 - t_k} \quad (12)$$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125

C_T 와 C_I 를 합하여 가중평균하면 전체적으로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k \left(\frac{r(1 - bt_f)}{1 - t_f} \right) + (1 - k) \left(\frac{r}{1 - t_k} \right) \quad (13)$$

마) 한계유효세율의 계산

한계유효세율은 세전수익률을 나타내는 자본의 사용자비용(C)에서 세후수익률(r)을 공제한 유효한계세부담을 세전수익률(C)로 나눈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사용하여 현행 세제하에서의 공제한도 미달기업, 공제한도 초과기업, 그리고 해외배당소득 면제제도하에서의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법정세율과 유효세율에 대한 가정〉

- 우리나라 법정세율: 25%(2007년 세율)
- 현지의 유효세율(t_f): 공제한도 미달인 경우 10%, 공제한도 초과인 경우 25%

〈투자에 대한 가정〉

- 현지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은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동일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없음
- 무형자산은 사용료소득을 발생하며, 사용료소득은 현지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거주지에서는 정상 과세됨
- 총투자 중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중(k)은 90%임(2005~2007년 해외 현지법인의 세후소득과 한국의 모기업에 지불한 사용료의 합계에서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였음)

〈재원의 조달〉

- 한계투자의 5%는 차입으로 조달되며, 95%는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됨(2005~2007년 해외현지법인이 한국의 모기업에 지불한 이자와 배당의 비율이 약 5:95였음)

- 자본의 필요 세후수익률은 실질이자율과 동일함
- 기업은 유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의 5%를 배당함 (2005~2007년 해외투자법인이 한국의 모기업에 배당한 금액은 세전소득의 0.02%였음(100% 이상인 경우 제외시))
- 외국납부세액 공제 목적의 그로스업 비율(t_g) : 15%

〈이자 및 기타 비용 공제〉

- 현행 제도하에서 공제한도 미달기업은 이자비용의 50%를 모기업에서 공제함
-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 이자비용은 모두 원천지소득에서 공제함
- 해외소득 면제제도하에서는 현지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면세 소득에서 공제함

〈표 V-7〉은 2007년의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여 현행 제도에서 한계유효세율을 구하고 그것을 배당면세제도하에서의 한계유효세율과 비교한 것이다.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유형자산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한계세율이 9.79%인 데 비해 면세제도에서는 9.55%로 미세한 변화를 보인다. 그 결과 무형자산과의 가중평균치도 11.58%에서 11.37%로 0.21%포인트 세부담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를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담은 제도 변화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반면 제도 변화가 없는 무형자산의 경우 오히려 과세체계 전환 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자산 세부담을 상쇄하는 교차공제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한계세부담이 22.18%에서 24.15%로 상승하며, 증가된 세부담으로 인한 세수입은 거주지국 정부에 귀속된다.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127

〈표 V-7〉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t_k = 25\%$)

| | 현행 제도 | | 해외배당소득 면세 | |
|------|-----------------------|-----------------------|-----------|----------|
| | 공제한도 미달 (현지세율 10%) | 공제한도 초과 (현지세율 25%) | 현지세율 10% | 현지세율 25% |
| 유형자산 | 0.0979 | 0.2405 | 0.0955 | 0.2405 |
| 무형자산 | 0.2500 | 0.0000 | 0.2500 | 0.2500 |
| 가중평균 | 0.1158 | 0.2218 | 0.1137 | 0.2415 |

〈표 V-8〉에서는 2007년 이후의 법인세율 변화를 고려하여 법인세율이 20%가 되는 경우의 유효세부담을 구해 비교하였다. 표는 3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패널에서는 법인세율만 25%에서 20%로 바꾸고 다른 모든 가정은 〈표 V-7〉의 기본 가정을 유지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과세체계 전환시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한계세율이 9.61%에서 9.55%로 0.06%p 하락하고 무형자산을 고려한 가중평균도 10.77%에서 10.71%로 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에는 가중평균 세율이 22.18%에서 23.66%로 1.4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패널은 현지법인의 배당률을 5%에서 10%로 증가시키고 그로스업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할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을 정리하였다. 이 경우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현행 제도에서는 11.48%,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에서는 10.71%이며,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가중평균 세율은 첫 번째 패널 결과와 동일하게 각각 22.18%와 23.66%로 나타났다. 세 번째 패널은 기본모형에서 유형자산의 비율만 90%에서 80%로 변경시킨 것인데,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현행은 11.9%, 면세제도에서는 11.85%이고,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 현행 20.21%, 면세제도 2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t_k = 20\%$)

| 가정 | 자본의 형태 | 현행 제도 | | 해외배당소득 면세 | |
|--------------|-----------|-----------------------|-----------------------|-------------|-------------|
| | | 공제한도 미달 (현지세율 10%) | 공제한도 초과 (현지세율 25%) | 현지세율 10% | 현지세율 25% |
| $p = 5\%$ | 유형자산 | 0.0961 | 0.2405 | 0.0955 | 0.2405 |
| $t_g = 15\%$ | 무형자산 | 0.2000 | 0.0000 | 0.2000 | 0.2000 |
| $k = 90\%$ | 가중평균 | 0.1077 | 0.2218 | 0.1071 | 0.2366 |
| $p = 10\%$ | 유형자산 | 0.1041 | 0.2405 | 0.0955 | 0.2405 |
| $t_g = 10\%$ | 무형자산 | 0.2000 | 0.0000 | 0.2000 | 0.2000 |
| $k = 90\%$ | 가중평균 | 0.1148 | 0.2218 | 0.1071 | 0.2366 |
| $p = 5\%$ | 유형자산 | 0.0961 | 0.2405 | 0.0955 | 0.2405 |
| $t_g = 15\%$ | 무형자산 | 0.2000 | 0.0000 | 0.2000 | 0.2000 |
| $k = 80\%$ | 가중평균 | 0.1190 | 0.2021 | 0.1185 | 0.2327 |

이상의 한계유효세율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경우 거주지과세를 폐지하고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한계세부담이 인하되고,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한계세부담은 변함이 없어 양자를 결합한 한계세부담이 인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하폭은 $0.2\%p$ 정도로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한계세부담 인하 폭이 적은 이유는 해외현지법인의 이익배당률이 매우 낮아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효세부담이 낮은 상태이며, 이에 더하여 이자비용의 일부를 모기업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면세제도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제한도 초과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도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제도로 전환해도 세부담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무형자산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129

에서는 영업이익과의 교차공제(cross-crediting)를 통해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데 비해 면세제도에서는 교차공제의 가능성이 차단되므로 유효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면세로 전환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종합한 세부담이 비교적 큰 폭으로(2%p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계유효세율의 변화로 판단해 볼 때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해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대상 지역별로 보면 저세율국에 대한 투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고세율국에 대한 투자유인을 축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외배당소득 면세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징수하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므로 거주지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거주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이들 기업으로부터의 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경우에는 거주지 과세 포기로 인해 거주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경우를 보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들 기업은 현 상태에서 해외직접투자소득의 거주지 환수율이 매우 낮아 거주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매우 적은 상태이다. 국세청에서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규모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앞서 현지 법인세율과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지 세

율이 10% 미만인 국가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 기업은 해외소득을 대부분 현지에 유보하여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10%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외소득의 일부를 환수하기는 하지만 현지세율과 국내세율 간의 차이가 작아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의 일부를 모기업의 비용으로 공제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에서는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서 검토한 한계유효세율의 분석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공제한도 미달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거주지 세수입에 주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 유형자산 투자와 무형자산 투자로 구분해 보면, 유형자산 투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거주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하에서 존재하는 유형자산 소득과의 교차공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면세제도로 전환시 거주지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로의 전환은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거주지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경우에 면세제도 전환이 세부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편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경우에는 무형자산 소득과 유형자산 소득의 교차공제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거주지 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 과세체계 전환과 이전가격 조작 유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미달하는 기업의 국내 과세가 면제되므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소득으로 이전하면 국내 과세를 피하고 세율이 낮은 원천지 세금만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전가격 조작 유인은 있으며, 해외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현행 제도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면세제도로 전환하여도 한계유효세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거주지 과세 포기'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에 비해 실제 세부담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가격 조작 유인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한계유효세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소득의 환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소득의 환수율이 높아진다면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한계유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커질 수 있다. 국내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해외 현지 소득으로 이전하되 실제 소득의 사용은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제도하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고 그 소득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거주지국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외로 이전한 소득을 거주지국으로 환수할 때 거주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보다는 면세제도에 서의 이전가격 조작 동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전가격 조작의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교한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APA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력을 강화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조세제도 및 행정의 단순화

현행 제도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조세제도 및 행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세금의 납부단계를 보면 먼저 원천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원천지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에서는 거주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거주지에 세금을 납부하는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외소득을 모두 일괄하여 공제한도를 설정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국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결정하므로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

또한 거주자가 직접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직접납부세액공제와 현지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간접납부세액공제제도로 구분되며, 양자에 대해 각각 다른 공제한도를 적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지에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을 환수된 소득에 더하여 즉, 그로스업하여 소득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세액을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지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조세 혜택을 원천지에 납부한 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 세액만을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과세이연과 관련해서는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과세이연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FC제도(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를 두고 있으며, 해외유보소득을 다른 형식(예, 자본금의 회수 등)으로 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면 이러한 대부

분의 복잡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공제한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복잡성을 피할 수 있고, 과세이연의 동기가 사라지므로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단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율이 달라지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가격 조작의 동기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전가격세제는 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제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면세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는 문제인데 이 역시 이전가격세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소결 : 과세체계 전환의 필요성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대변되는 현행 세제는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이 제도가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또한 자국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하였다.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도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과세는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와 같으며,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현지소득을 거주지로 환수하지 않으면 거주지 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원천지주의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거주지주의 과세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고세율국의 기업은 원천지에 세금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고세율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이 원천지국에 납부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20%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실효세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현지유보는 유보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과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실태를 보면 현지세율이 25% 이상인 국가에 투자한 법인의 경우 현지소득을 모기업으로 환수하는 비율이 평균 약 24%인 데 비해, 현지 세율이 15~25%인 경우에는 소득 환수율이 약 17%로 낮아지고 현지 세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거의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하여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 저세율국에 투자하는 것이 세부담 절감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여 결과적으로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직접투자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시장규모와

V.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135

그 지역의 소득수준 (또는 임금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어느 지역의 국가인지(예, 북미지역, 동아시아지역, 유럽지역 등)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는 원천지와 거주지 세부담 모두 투자대상지를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할 때의 해외직접투자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면세제도로의 전환이 해외투자 유인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한계유효세율이 인하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폭이 작아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면세제도로 전환시 오히려 한계유효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제도로 전환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거주지 과세의 포기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도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률이 매우 낮아 세수입이 많지 않다. 또한 면세제도로 전환시 공제한도 미달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공제한도 초과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환 후 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국내소득을 해외 현지법인의 소득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전가격 조작의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세로 전환하면 이전가격 조작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면세

제도로 전환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커지는 문제는 있다. 이전가격 조작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면세로 전환하면 관련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정책제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입장에서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른 국가의 과세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여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한다.

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해외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우선 어떤 소득에 대해 면세를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조세피난처를 비롯한 저세율국들 중에는 모든 국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면세하거나 또는 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투자소득을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직접투자 소득으로 구분할 때 JCT(2008), Hufbauer and Assa(2007) 등 미국에서 해외소득 면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문헌들은 대체로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다. 포트폴리오투자는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만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주지에서 추가로 과세하여도 자국 소재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포트폴리오투자는 조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면 투자자금의 대대적인 해외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소득이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원천지 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10% 또는 그 이하로 세율이 제한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와 같은 조세조약 체결 정책은 암묵적으로 이들 소득에 대해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소득을 거주지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이들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다른 소득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소득의 경우 중간에 실질적으로 투자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법인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거주지주의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자본수출 중립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소득의 경우 소득의 성격상 순수한 포트폴리오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용료의 국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세이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포트폴리오투자와 성격이 유사하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이 원천지주의로 과세를 전환하기보다는 거주지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은 직접투자소득에 국한된다. 직접투자소득도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지점소득으로 구분되는데 현지법인의 배당소득과 지점소득은 과세상 차이가 있다. 현지법인소득은 다른 국가 법인의 소득이므로 그 소득이 투자자 거주지로 환수될 때까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한 데 비해 지점소득은 거주지국의 본사 소득과 통합하여 거주지국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이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현행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일부는 지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지법인 배당의 경우 수취배당을 모기업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면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지점소득은 본사소득과 함께 통산되므로 지점소득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점소득을 분리 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인지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기업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해외소득 면세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는 문제가 가장 큰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상황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지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면세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거주지에서 세금신고도 할 필요가 없게 할 수도 있는 반면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거주지에서 세금 신고를 하되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원천소득 전액 또는 그 중 일부를 거주지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 후자를 참여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라고 한다. 그 외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만 면

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지에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면세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해외소득 면세제도가 저세율국을 통한 거주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면세의 방법을 설정할 때 조세회피 가능성을 축소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과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가 7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므로 아직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면세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대상을 조세조약 체결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면세제도 적용 대상국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면세범위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현지법인의 배당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90~95%)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아직 조세회피 가능성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으므로 시행 초기에는 90% 정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배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간접비용을 모기업에서 손금산입하든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손금산입하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소득 면세제

도하에서는 해외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간접비용을 거주지국 세액에서 공제하면 거주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면세대상 해외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8 APA 연차보고서』, 국세청, 2009. 6.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기영,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6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5. 6.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준영 · 이용섭,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과세 및 한국의 국제실효세를 및 투자효과 분석』, 『재정논집』, 제14집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0. 2.
- 김진수 · 박형수 · 안중석,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법인세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3-05,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중석,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94-12, 한국조세연구원, 1994. 12.
- _____,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 _____. 최준욱,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3-06,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_____. 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세법연구 06-04, 한국조세연구원, 2006. 11.
- _____. 홍범교,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최영렬, 『한국의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8.
- 한국수출입은행, 『2007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08. 10.
- _____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해외투자통계.
- 한도숙,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연구보고서 00-08,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 Altshuler, Rosanne and Harry Grubert, “Multinational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The Many Roads Home,” Rutgers Univ, Dept. of Economics, Working Papers, No. 199807, 1998.
- _____, “Where Will They Go If We Go Territorial? Dividend Exemption and The Location Decisions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National Tax Journal*, 54, No. 4, 2001. pp. 787~809.
- Conconi, Paola, “Is Capital Tax Centralization Desirabl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5761, 2006.
- Desai, Mihir A., C. Fritz Foley, and James R. Hines Jr., “Repatriation Taxes and Dividend Distortions,” *National Tax Journal*, 54, No. 4, 2001, pp. 829~851.
- Desai, M. A., and J. Hines, “Old Rules and New Realities : Corporate Tax Policy in a Global Setting,” *National Tax Journal*, 57, No. 4, 2004, pp. 937~960.
- Graetz, Michael J. and Paul W. Oosterhuis, “Structuring an Exemption System for Foreign Income of U.S. Corporations,” *National*

- Tax Journal*, 54, No. 4, 2001, pp. 771~786.
- Grubert, Harry, "Enacting Dividend Exemption and Tax Revenue," *National Tax Journal*, 54, 2001, pp. 811~827.
- Grubert, Harry and John Mutti, "Do Taxes Influence Where U.S. Corporations Invest?," *National Tax Journal*, 53, No. 4, Part 1, 2000, pp. 825~839.
- _____, *Taxing International Business Income: Dividend Exemption versus the Current System*, Washington, DC: Publisher for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01.
- Grubert, Harry and Rosanne Altshuler, "Corporate Taxes in the World Economy: Reforming the Taxation of Cross-Border Income," Rutgers Univ, Dept. of Economics, Working Papers, No. 200626, 2006.
- Hartman David G., "Tax Polic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5, pp. 107~121.
- Hufbauer Gary Clyde and Ariel Assa, *US Taxation of Foreign Income*,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ober 2007.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conomic Efficiency and Structural Analyses of Alternative U.S. Tax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JCT Report(JCX-55-08), June 25, 2008.
- Jun, Joosung, "Tax Ploicy an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3048, 1989a.
- _____, "What Is the Marginal Source of Funds for Foreign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3064, 1989b.
- King, M.A. and D.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The National Foreign Trade

- Council Comments on the Taxation of Foreign Source Business Income,” Washington, DC, December 12, 2008.
- _____, *Territorial Tax Study Report*, Washington, DC, June 11, 2002.
- Peroni, Robert J., “Deferral of U.S. tax on international income: End it, don’t mend it—why should we be stuck in the middle with Subpart F,” *Texas Law Review*, May 1, 2001.
- Repetti James R., “Will U.S. Investment Go Abroad in a Territorial Tax: A Critique of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Tax Reform,” *Florida Tax Review*, Vol 8, Number 3, 2007.
- Rosenbloom, David H., “From the Bottom Up: Taxing the Income of Foreign Controlled Corpora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 No. 4, 2001.
- Sinn, Hans-Werner, “Taxation and the Birth of Foreign Subsidiaries,” NBER Working Paper, No. 3519, 1990.
- Sullivan, Martin A.,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nternational Tax Wisdom,” *Tax Notes*, December 22, 2006.
-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Simple, Fair, & Pro-Growth: Proposals to Fix America’s Tax System*, November 2005.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New York and Geneva, 2005.
- _____, *World Investment Report: Transnational Corporation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and Geneva, 2009.

〈부표 1〉 해외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배당률

(단위: %)

| 국가 | 법인세율 (2005~07 평균) | 배당률 | | | |
|--------|----------------------|--------|--------|--------|--------|
| | | 2007 | 2006 | 2005 | 평균 |
| 일본 | 72.21 | 3.99 | | | 72.02 |
| 캐나다 | 67.78 | 0.00 | | 16.62 | 210.40 |
| 포르투갈 | 58.02 | 0.00 | 0.00 | 0.00 | 0.00 |
| 인도네시아 | 51.83 | 54.19 | 71.79 | 62.62 | 62.36 |
| 아르헨티나 | 50.03 | 0.00 | | 0.00 | 0.00 |
| 헝가리 | 42.35 | | 0.00 | 0.00 | 0.00 |
| 프랑스 | 40.31 | 0.00 | 0.00 | 29.73 | 1.87 |
| 이탈리아 | 40.25 | 0.00 | 0.00 | 13.67 | 2.11 |
| 슬로바키아 | 40.08 | 0.00 | | 0.00 | |
| 러시아 | 38.28 | 10.17 | 0.00 | | 8.80 |
| 독일 | 37.21 | 0.20 | | | |
| 페루 | 36.44 | 0.69 | 0.00 | 0.00 | 0.40 |
| 브라질 | 36.43 | 28.61 | 111.68 | 6.47 | 28.15 |
| 영국 | 35.77 | 58.07 | 0.00 | 0.30 | 28.68 |
| 미국 | 34.27 | | 31.20 | | |
| 인도 | 33.71 | 0.19 | 0.10 | 0.00 | 0.14 |
| 말레이시아 | 32.26 | 587.40 | 20.00 | 135.92 | 92.49 |
| 스웨덴 | 30.91 | 0.00 | 0.00 | 29.45 | 5.68 |
| 벨기에 | 30.88 | 0.00 | 0.00 | 0.00 | 0.00 |
| 스페인 | 30.71 | 396.13 | 0.00 | 44.94 | 57.49 |
| 파푸아뉴기니 | 30.06 | 94.77 | 104.38 | 0.00 | 70.58 |
| 베트남 | 29.24 | 16.57 | 177.55 | 177.69 | 46.92 |
| 미얀마 | 29.00 | 0.00 | 0.00 | | 0.00 |
| 노르웨이 | 27.99 | | 0.00 | | |
| 네덜란드 | 26.75 | 0.00 | | 0.00 | 0.00 |

〈부표 1〉의 계속

| 국가 | 법인세율 (2005~07 평균) | 배당률 | | | |
|----------|----------------------|--------|--------|--------|--------|
| | | 2007 | 2006 | 2005 | 평균 |
| 오스트레일리아 | 23.09 | 5.90 | 10.56 | 0.00 | 7.47 |
| 몽골 | 20.34 | 23.85 | 15.73 | 18.22 | 18.58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2 | | 24.07 | 18.92 | 28.98 |
| 대만 | 19.96 | 2.50 | 0.11 | 0.00 | 1.50 |
| 터키 | 17.80 | | | 0.00 | |
| 칠레 | 17.70 | 0.00 | | 0.00 | 0.00 |
| 중국 | 13.64 | 30.14 | 23.41 | 36.32 | 28.98 |
| 태국 | 11.04 | 19.76 | 39.22 | 62.58 | 30.05 |
| 스리랑카 | 10.31 | 104.43 | 164.32 | 230.87 | 166.16 |
| 싱가포르 | 8.00 | 0.00 | 0.55 | 0.00 | 0.22 |
| 룩셈부르크 | 5.22 | 0.00 | | 0.00 | 0.00 |
| 필리핀 | 5.06 | 0.00 | 0.00 | | 0.00 |
| 홍콩 | 4.16 | 53.81 | 86.67 | | 136.91 |
| 파키스탄 | 3.18 | 0.00 | | | 0.00 |
| 오스트리아 | 2.36 | 0.00 | 0.00 | 0.00 | 0.00 |
| 방글라데시 | 1.79 | 0.00 | 0.00 | 0.00 | 0.00 |
| 파나마 | 0.41 | 0.00 | | | |
| 과테말라 | 0.00 | 0.00 | | | 0.00 |
| 괌 | 0.00 | | 0.00 | | 0.00 |
| 솔로몬군도 | 0.00 | 0.00 | | | |
| 아랍에미리트 | 0.00 | 0.00 | | 0.00 | 0.00 |
| 영국령버진군도 | 0.00 | 0.00 | | 0.00 | 0.00 |
| 온두라스 | 0.00 | 0.00 | | 0.00 | 0.00 |
| 우즈베키스탄 | 0.00 | | 0.00 | | |
| 이스라엘 | 0.00 | | | 0.00 | |
| 케이만군도 | 0.00 | | 0.00 | 0.00 | |
| 총합계 | 33.70 | 31.47 | 34.59 | 89.52 | 38.43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

<국문요약>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안종석 · 정재호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크게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있다.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은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강대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또는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전가격 조작은 현재도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거주지 과세 면세대상 소득은 직접투자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사용료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거주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세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정하여 적용하

고 면세범위도 90% 정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면세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thinking the Taxing Rule on Direct Investment Abroad: Residence Principle vs Territorial Principle

Jongseok An and Jaeho Che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hanging the tax regime on direct investment abroad from the residence principle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in Korea. Theoretically, the residence principle is expected to be neutral to capital export and therefore to ensure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the world economy. However, the tax practices in the real world are different from the ideal residence principle. Thus we examined the tax practi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practices, and tried to find the way to improve.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residence tax in Korea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repatriation of income from foreign affiliat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We also investigated the expected effects of change in taxing rule from the residence principle to the source principle on direct investment in low tax countries, tax revenue in Korea, and incentives for transfer pricing. And we concluded that the change may mitigate the problem of current tax system with little negative effects. In the last section, we discussed the way to move from the residence principle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in taxing income from foreign affiliates of Korean firms.

〈著者略歷〉

안종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준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성미정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09-04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안종석·정재호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48-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